

중국 농산물 수입 적정관리를 위한  
TSG제도 활용방안 연구



2004. 10.

세계농정연구원

# 중국 농산물 수입 적정관리를 위한 TSG제도 활용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최 용 규 (세계농정연구원 원장)

연 구 원 : 유 병 호 (한성대학교 교수)

연 구 원 : 조 성 제 (한성대학교 강사)

연구보조원 : 박 석 규 (세계농정연구원)

연구보조원 : 리 금 (세계농정연구원)



세 계 농 정 연 구 원  
Global Agriculture Policy Institute

# 제 출 문

농림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중국 농산물 수입 적정관리를 위한 TSG제도 활용방안 연구” 용역과제의 최종성과물로 제출합니다.

2004년 10월

제출자: 세계농정연구원장

# 목 차

1. TSG제도의 개요 .....	5
2. WTO/DDA농업부문협상 및 2004년 쌀협상 .....	15
3. 중국산 농산물 수입현황 .....	19
4. TSG제도의 구체적 사례 .....	25
5. TSG제도의 활용방안 .....	50
6. 결론 및 정책제언 .....	57
■ 참고자료 .....	61

## 1. TSG제도의 개요

### 가. 한시적 세이프가드조치 (TSG; Transitional Safeguard)

- TSG제도는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6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써, 이 제도는 중국산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WTO회원국들이 중국산 품목에 대해 관세인상 또는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정함으로써 중국산에 대한 최혜국대우원칙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제도임.
- TSG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중국이 2001년 12월 WTO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세계시장을 급격하게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다른 회원국들이 우려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임. 즉 WTO 회원국으로서 최혜국대우를 받게 될 중국산 품목의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수입국들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WTO는 중국의 WTO 가입시점부터 12년 동안(2001.12.11 ~ 2013.12.10) 한시적으로 TSG제도를 인정함.

### 나. TSG제도의 주요내용

- TSG(Transitional Safeguard)제도는 한시적 세이프가드조치 또는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서는 이를 ‘세계무역기구의 특정회원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라고 규정하고 있음.
- TSG제도의 발동요건으로는 시장교란요건 또는 무역전환요건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경우임.
  - 시장교란요건 : 중국산의 수입급증으로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무역전환요건 : 어느 WTO 회원국이 중국산에 대해 TSG조치를 취함으로써 인하여 중대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당해물품이 다른 WTO 회원국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 TSG제도의 발동은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역위원회에 위 TSG제도의 발동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시작됨.
- 시장교란여부의 판정기준은 중국산의 수입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중대한 원인이어야 함. 세부적 판정기준으로는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량, 수입이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 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수입이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의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함.
- 무역전환여부의 판정기준은 다른 회원국(들)이 취한 중국산에 대한 TSG 제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중대한 무역전환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어야 함. 세부판정기준으로는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수입의 사실상 또는 임박한 시장점유율 증가, 중국 또는 다른 WTO회원국에 의해 취해지거나 제안된 조치의 내용 및 범위, 중국 또는 다른 WTO회원국에 의해 취해지거나 제안된 조치로 인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사실상 또는 임박한 수입량 증가, 당해물품에 대한 국내 수요공급 상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한 WTO 회원국과 국내시장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출 현황 등을 검토함.
- 조사결과 시장교란요건 또는 무역전환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무역위원회는 조치의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음.
  - 무역위원회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을 건의할 수 있는 조치로는 관세율의 조정과 수입물품 수량의 제한 등이 있음. 또한 무역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음.
  -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당해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며, 이 세이프가드조치는 4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일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총기간은 최초의 잠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 그 연장기간은 물론 다시 조치를 발동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등을 포함하여 총 8년을 초과할 수 없음. (WTO세이프가드협약 제7조에 규정된 사항임)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3항은 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주기로 그 내용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SG제도는 물론 TSG제도에 의해 발동된 세이프가드조치에도 적용됨.
- 동조 5항에서는 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2년 미만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다시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였음. 예외규정으로 당해 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시행된 세이프가드조치가 2회 이내일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다시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WTO세이프가드협약 제7조에 규정된 사항임)
- 그러나 TSG제도의 의한 세이프가드조치가 중국산 수입의 상대적 증가로 인해 시행된 경우에는 2년 그리고 절대적 증가로 인해 시행된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게 되면 중국도 이에 상응한 양허 또는 의무이행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따라서 TSG제도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실제로 2년 또는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없음.
-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무역전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된 조치를 취한 다른 WTO 회원국에 대해서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이러한 협의요청 사실을 즉시 WTO SG(세이프가드)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 양자협에서 중국산의 시장교란 사실과 대응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국은 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WTO SG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이 경우에는 수입국이 추가적으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없어짐.
- 만약 양자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WTO SG위원회와 무역위원회에 각각 통보해야 함.

- 조사신청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당해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면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잠정특별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잠정조치 기간은 양자협약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된 세이프가드 조치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됨.

#### 다. 세이프가드조치, 농산물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와의 비교

- 현재 WTO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앞서 설명한 TSG제도와 유사한 것으로는 GATT(1994)협정 제19조 및 WTO세이프가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이프가드조치(SG제도)와 WTO농산물협약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대상 농산물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SSG제도)가 있음.

##### (1) 세이프가드조치 (SG제도; Safeguard)

- SG제도는 GATT(1947)협정 제19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GATT 출범 당시 부터 인정되어 온 제도이며, SG제도는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증해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인정하는 수단임.
- SG제도는 수입국의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동시에 기동성 있는 발동이 가능해야만 그 의미가 있음. TOKYO라운드(1973.9~1979.4) 등에서 관련 규정의 보완을 시도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UR협상에서 WTO세이프가드 협약을 탄생시킴.
- GATT체제(1947~1994)에서 GATT에 통보된 각국의 세이프가드조치 발동건수는 23개국 총 150건임.
- 국가별로는 호주 32건, 미국 27건, 캐나다 23건, EC 21건, 오스트리아 8건, 남아공 4건 등으로 많이 발동하였음.



- 우리나라는 GATT 체제하에서 발동했던 세이프가드조치를 GATT에 통보한 적은 없지만, WTO 체제가 출범한 후 발동한 세이프가드조치들(1996년 5월 모조분유, 1996년 7월 일반용 자전거 및 동 부품, 1999년 9월 마늘 등)은 WTO SG위원회에 통보하였음.
- SG제도의 발동요건으로는 조사신청인의 신청에 의거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결과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무역위원회에서 판정되어야 함.
  - SG제도에서 발동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는 WTO반덤핑협약 또는 WTO보조금/상계관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보다는 그 피해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TSG제도에서 발동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장교란(market disruption)은 관련국내산업이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됨.
- 1987~2003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세이프가드를 신청한 건수는 33건이었으며, 이중 발동요건에 대해 긍정적 판정을 받은 것이 22건이었음. 그리고 긍정적 판정을 받은 22건 중에서 21건이 1차산품이었으며 나머지 1건만이 공산품이었음.
  - 동 기간 동안 관련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을 받아 시행된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22건 중에서 관세율 인상이 12건, 수량제한이 4건, 그리고 행정지도가 6건이었음.
  -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 시행되었던 세이프가드조치는 농협중앙회가(1999년 9월 30일) 신청하여 긍정적 판정을 받아서(2000년 5월 31일)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한 것임 (한중간 합의결과를 반영하여 중국산 마늘에 대해서는 관세쿼타제도를 도입 그리고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조치내용을 변경, 2000년 8월 2일).

- 2001년 2월 10일에는 중간직권조사를 통해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는 한편 한중간 합의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확보를 요청했으며, 2002년 6월 28일 농협중앙회는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재검토를 신청했으나 동년 7월 29일 기각됨.
- 1999년 9월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긴급관세 부과)는 WTO SG위원회에 통보하고, 동 위원회에서도 이를 인정 받았음.
- 그러나 당시 WTO비회원국이었던 중국은 마늘과 관련없는 농산물이 아닌 다른 공산품분야에 대한 보복조치를 실시하였고,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중국산 냉동마늘 및 초산조제마늘에 대해서는 쿼터를 설정하여 저율관세(30%) 적용키로 그 조치내용을 변경하였음(2000년 8월 2일).



(2) 농산물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SSG제도; Special Safeguard)

- 농산물SSG제도는 UR협상에서 합의한 농산물 관세화 조치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WTO농산물협약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임. 농산물SSG제도의 적용대상은 관세화 농산물로서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SSG라는 기호를 명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한 품목으로 한정됨.
- 우리나라는 UR협상에서 양허한 SSG제도 부과대상품목 117개 중에서 1995년 76개 품목, 1996년 61개 품목을 부과대상품목으로 명시함.
- 농산물SSG제도의 발동요건은 국내산업의 피해여부에 대한 별도의 조사절차 없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가능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농업위원회에 관련자료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농산물SSG제도에서 인정하는 조치로는 관세율의 인상은 가능하지만 수량제한은 실시할 수 없음. 그리고 관세인상 폭에 대해서도 초과된 수량에 따라 또는 가격차이의 크기에 따라 그 인상폭이 사전 결정되어 있음.
- 양허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수량이 제4조의 기존 시장접근기회와 관련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 국내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발동수준을 낮게 책정하여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준발동수준을 초과하는 수입증가에 대해서는 관세상당치의 1/3 범위 내에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1) 당해품목의 시장접근기회가 10% 이하인 경우 기준발동수준은 125%,
  - (2) 당해품목의 시장접근기회가 10~30%인 경우 기준발동수준은 110%,
  - (3) 당해품목의 시장접근기회가 30% 이상인 경우 기준발동수준은 105%이며 추가적인 관세는 추가관세가 부과된 당해연도 말일까지만 유지됨.
- 양허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가격이 c.i.f.가격 기준으로 자국통화 환산시 발동가격 (1986-88 평균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
  - (1) 수입가격과 발동가격의 차이가 발동가격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추

가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 (2) 수입가격과 발동가격의 차이가 발동가격의 10~40%인 경우에는 추가 관세는 가격차가 10%를 초과하는 부분의 30%,
  - (3) 수입가격과 발동가격의 차이가 발동가격의 40~60%인 경우에는 (2)의 관세에다 가격차가 40%를 초과하는 부분의 50%를 합침.
  - (4) 수입가격과 발동가격의 차이가 발동가격의 60~75%인 경우에는 (2)와 (3)의 관세에다 가격차가 60%를 초과하는 부분의 70%를 합침.
  - (5) 수입가격과 발동가격의 차이가 발동가격의 75% 이상인 경우에는 (2), (3), (4)의 관세에다 가격차가 75%를 초과하는 부분의 90%를 합침.
- 농산물SSG제도는 1년 단위로 조치가 가능하며, 이 제도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할 뿐 아니라, 차기협상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농산물SSG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임.
- 다만 2004년 8월 1일 채택된 WTO/DDA 농업부문협상의 Modality framework에 따르면 선진국에 대해서는 현재의 농산물에 대한 SSG제도 유지여부를 계속 협상해 가기로 하는 한편, 개도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SSM(special safeguard mechanism)을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표 2> 세가지 제도(TSG, SG, SSG)간 비교

	일반 SG	농산물 SSG	대중국 TSG
발동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국과 사전협의 및 SG위원회 통보 (긴급시에는 사후협의 가능)</li> <li>-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협의 불필요. 조치 발동 후 10일 이내에 농업위원회에 통보</li> <li>- 수입수량 증가 또는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가격상태에 대한 현저하고도 전반적인 피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국과 사전협의 (60일 이내) 및 SG위원회 통보</li> <li>- 수입증가로 시장교란 또는 시장교란 우려가 있거나 타 회원국의 TSG로 무역전환 또는 무역전환 우려</li> </ul>
산업피해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업에 현저하고도 전반적인 피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성 또는 계절성이 큰 농산물의 경우에는 특정기준가격의 사용이 가능하여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개념을 현실화시킴 (예: 특정주간의 평균수입가격을 발동기준가격으로 설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교란의 개념은 심각한 피해는 물론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관세에서 말하는) 실질적 피해보다 더 약한 개념으로 해석</li> <li>- 피해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음</li> </ul>
대상품목 및 조치적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품목에 제한 없음</li> <li>- 산업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는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관세화 대상품목 중에서 SSG로 명기한 품목</li> <li>- 관세화 이행기간 동안 적용가능한 한시적 조치로서 2005년 이후에 대해서는 현재 협상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전품목</li> <li>- 2001년 12월 11일부터 2013년 12월 10일까지 12년 동안에만 가능</li> </ul>
구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양허(협정 제2조의 정지, 관세인상, 수입수량제한 등이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적인 관세인상만 가능하며, 인상폭도 사전 설정되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인상, 수입수량제한 등이 가능</li> </ul>
조치존속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의 기간 이내에서 구제에 필요한 기간 (총 8년까지 연장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량기준: 당해연도 말</li> <li>- 가격기준 : 별도의 제한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의 기간 이내에서 필요한 기간. 다만 상대수량 증가시 2년, 절대수량 증가시 3년이 지나면 중국도 상응조치 가능</li> </ul>
보복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협정 발효후 최초의 3년간을 제외하고는 이해관계국의 보복조치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국의 보복조치 불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도 SG등을 이용한 보복조치의 가능성 있음</li> </ul>

## 2. WTO/DDA 농업부문협상 및 2004년 쌀협상

### 가. WTO/DDA 농업부문협상

- 2003년 9월 Cancun에서 개최되었던 WTO각료회의가 결렬됨으로 인하여, 그 전망이 불투명했던 WTO/DDA협상은 2004년 7월 새로운 전기를 맞아 농업부문 및 비농업부문 협상의 Modality framework를 비롯하여 각 부문별 협상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고, 이러한 진전사항들이 포함된 'July Package (Framework Agreement)'가 2004년 8월 1일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
- 특히 농업부문협상에서 합의된 Modality framework에서는 개도국의 주요 관심사항인 Cotton문제, 국내보조금, 시장접근, 후발개도국 및 신규회원국에 대한 대우, 감시 및 규제 등에 대한 기본적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음.
- 농업부문 Modality framework 중 시장접근관련 주요내용으로는 전 품목에 걸친 한 가지 방식의 관세감축 추진, 고율관세의 대폭 삭감, 민감품목에 대한 고려, 개도국에 대한 원칙적 배려, 신규가입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 등에는 합의하였음.
  - 고율관세에 대해서는 대폭 감축한다는 원칙과 한 가지 방식으로 관세감축을 실시한다는 점에는 합의했으며, 대상품목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감축하되 구간의 수 및 경계, 구간별 감축률 등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
  - 민감품목은 각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각 품목별 관세쿼타(TRQ)를 확대하며 관세쿼타제와 관세감축을 조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
  -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는 관세감축, 민감품목 외에 별도로 특별품목을 인정, TRQ 확대 및 이행기간 등에서 우대를 인정하고 SSM제도를 신설하기로 합의함.
  - 신규 회원국에 대해서 특별히 신축성을 인정한다는 원칙에 합의.

- 우리나라를 비롯한 G10국가들의 주요관심사항인 관세상한선의 역할에 대한 문제는 추후 평가하기로 함.
- 국내보조금 관련사항으로는 무역왜곡을 초래하는 국내보조금을 감축하되, 감축방법은 그룹을 정하고 그룹별 감축기로 함.
  - 현재 높은 수준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대폭 감축하고, 이행초기년도에 20%를 감축한다는 원칙에 합의함.
  - 품목특정적 AMS에 상한을 두고, 품목간 AMS 전환은 인정하지 않음.
  - 현행의 Blue Box 보조금은 농업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되, 농업생산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현재의 Green Box 보조금 제도를 다시 검토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대해서 고려하기로 합의함.
- 앞으로 WTO/DDA협상에 대한 전망은 2005년 12월로 예정된 홍콩 WTO 각료회의까지 Modality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향후 협상진행에 영향을 미칠 주요요인들로는 2004.10 EU회원국 확대에 따른 집행위원의 전면 교체, 2004.11 미국의 대통령선거, 2005.9 수퍼차이 WTO사무총장 임기만료 등이 있음.
  - 시나리오 I : 2005.12 홍콩 각료회의까지 Modality에 합의할 경우에는 회원국들은 2006년에 이행계획서 제출 및 양자협약 과정을 진행하여 2006.12 최종합의에 도달할 수 있음. 2007년에는 각 회원국별 국내 입법과정을 거쳐 2008년 1월부터 이행할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II : 2005.12 홍콩 각료회의까지 Modality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2006년에도 협상을 계속하여 미국의 신속협상권(TPA) 만료시한인 2007년 5월 30일 전까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 있음. 이 경우에 회원국간 양자협약, 국내입법과정 등을 거치면 실제 이행시점은 2009년 1월 이후로 늦어질 수 있음.



#### 나. 2004년 쌀협상

- UR농업협정문 부속서 5B에 근거, 2005년 이후 우리나라 쌀시장의 개방 여부는 2004년 9월 현재 진행 중인 쌀협상에서 결정됨. 우리나라와의 쌀협상에 참가를 희망한 국가로는 중국, 태국, 호주, 미국,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아르헨티나 등 총 9개국임.
- UR농업협정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 받아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음. 한편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최소시장접근(MMA)물량은 1995년 기준년도 평균 소비량의 1%인 5.1만 톤에서 2004년에는 4%인 20.5만 톤으로 늘어남.
- 만약 우리나라가 2005년 이후에도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려면 협상에 참가한 쌀수출국들에게 추가적으로 그리고 수용가능한 정도로 우리나라 쌀시장을 개방해야 함.
-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유예화 기간, 시장접근물량, 수입쌀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접근가능성 등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협상상대국들의 요구가 지나쳐 관세화 유예가 관세화보다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개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당초 예상과 같이 중단립종 쌀에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국은 쌀협상에서 쌀시장 관세화를 일차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관세화 유예의 경우에도 MMA물량의 대폭 증량과 쌀 이회의 현안사항의 해결까지 주장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가장 어려운 협상상대임.
- 세계 최대 쌀수출국인 태국은 2004년 약 8백만 톤의 쌀을 수출할 전망이다. 그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소비가 적은 장립종쌀임.
- 미국의 2004년 쌀 수출량은 약 3백만 톤으로 전망되며, 이 중 중단립종 쌀은 67만 톤으로 주로 일본, 한국, 대만, 터키, 요르단 등으로 수출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중단립종쌀의 경우 생산비가 중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에서는 불리한 입장임.

- 세계 최대의 쌀생산국인 중국은 장립종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990년대에 동북3성과 양쯔강 중하류지역인 지양수, 제지안, 안후이 등지에서 중단립종벼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중단립종쌀의 비중이 1980년 11%에서 1990년 16%, 2000년 29%로 늘어났음.
- 과거 중국의 중단립종쌀은 생산비와 재배기술에서는 우위에 있었으나 품질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음. 최근 품질개선과 일본, 독일 등에서 최신도정기계를 도입 도정기술의 향상으로 가격경쟁력은 물론 품질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중국의 쌀 수출여력은 더욱 증가할 것임.
- 만약 쌀협상이 결렬된다면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부과될 관세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 그러나 관세화유예기간동안에도 'shadow reduction'에 의거 계속 감축되었기 때문에 2005년의 잠정적 관세율은 1995년 기준 관세상당치에서 10% 낮아진 수준이 될 것임. 따라서 쌀시장 개방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쌀 수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쌀은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산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쌀시장 개방 시 중국산 쌀이 대량으로 수입될 경우에 우리 쌀시장은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며,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산 쌀에 대한 TSG제도의 발동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쌀시장 개방 시 중국산 쌀의 수입증가가 우리 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함. 각 시기별 국내산 및 중국산 쌀 출하량 및 가격동향에 관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중국산 쌀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쌀가격 및 쌀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TSG제도의 발동여건이 될 것인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함.
- 중국산 쌀 수입에 대해 TSG제도를 발동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이 중국에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쌀협상에서 leverage로 활용할 수 있음.

### 3. 중국산 농산물 수입현황

#### 가. 중국산 농산물수입 일반현황

- 1995년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 이후 농산물 수입총액은 계속 늘어나서 1997년에는 122억 달러를 초과했었으나, 1998년 외환위기로 전년의 절반 수준인 70억 달러로 감소함.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115억 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음.
- 농산물 수입총액에서 중국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장개방 초기인 1995~6년에는 10% 미만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2년에는 수입총액의 20%를 초과하는 23억 달러에 달함.

<표3> 중국산 농산물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별	농산물 수입총액[A]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				
		소계[B] (B/A)	농산물[C] (C/B)	축산물[D] (D/B)	임산물[E] (E/B)	수산물[F] (F/B)
1995	10,520	760 (7.2)	413 (54.3)	35 (4.6)	190 (25.0)	122 (16.1)
1996	12,026	1,027 (8.5)	532 (51.8)	41 (4.0)	246 (23.9)	208 (20.3)
1997	12,249	1,547 (13.8)	935 (60.4)	46 (3.0)	294 (19.0)	272 (17.6)
1998	6,991	960 (13.7)	622 (64.8)	14 (1.5)	127 (13.2)	197 (20.5)
1999	8,599	1,175 (13.7)	552 (47.0)	15 (1.3)	195 (16.6)	413 (35.1)
2000	9,862	1,892 (19.2)	1,152 (60.9)	23 (1.2)	230 (12.2)	487 (25.7)
2001	10,111	1,742 (17.3)	846 (48.5)	32 (1.8)	233 (13.4)	634 (36.3)
2002	11,469	2,321 (20.2)	1,266 (54.5)	43 (1.9)	293 (12.6)	719 (31.0)
2003	12,185	(n.a.)	1,726	39	298	(n.a.)

- 중국산 농산물 수입현황을 농축림수산물로 구분해 보면, 농산물 수입의 비중이 최저 47.0%에서 최고 64.8%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수산물 수입의 비중이 최저 16.1%에서 최고 36.3%, 그리고 임산물, 축산물의 순서임.
-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1995년 4억 달러(54.3%)에서 1997년 9억 달러(60.4%), 2002년에는 13억 달러(54.5%)를 기록하고 있음.
- 중국산 축산물 수입은 1997년 46백만 달러(3.0%)로 가장 높았고 2002년에도 43백만 달러(1.9%)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 중국산 임산물 수입은 1995년 190백만 달러(25.0%)에서 1997년 294백만 달러(19.0%), 2002년 293백만 달러(12.6%)로 2억 달러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며, 점차 그 비중이 작아지고 있음.
- 중국산 수산물 수입은 금액과 비중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1995년 122백만 달러(16.1%)에서 1997년 272백만 달러(17.6%), 2002년 719백만 달러(31.0%)로 증가했음.

#### 나. 중국산 농산물 수입 품목별 분석

-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농산물 양허품목 1450개 품목을 대상으로 1998년~2003년 동안의 수입금액 변동을 분석한 결과 약 390여개 품목에 걸쳐 중국산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UR합의에 의거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관세화를 통한 농산물 수입을 시작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이후의 농산물 수입현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중국산 수입농산물 중에서 TSG제도의 발동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허세율, 수입금액 및 수입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4개 그룹으로 대상품목을 선정하였음.
- <표4>에 있는 참깨, 대두, 팥 등 8개 품목은 2004년 양허세율 기준으로 고율관세(100% 이상)를 부과하는 품목 중에서 중국산 수입금액이 큰 품

목임. 고율관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수입이 많은 이 품목들의 경우에는 국내외가격변화에 따라서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TSG제도 발동가능성이 매우 높은 품목이라 할 수 있음.

- 만약 WTO/DDA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고율관세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관세상한 설정에 합의하는 경우, 이 품목들에 부과하던 관세는 대폭 삭감될 것이고 따라서 중국산 수입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4> 관세율 100% 이상으로 중국산 수입금액이 큰 품목

(단위 : 천 달러, 톤)

품 목	2004년 양허세율 (%)	연도별 수입금액, ( )안은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참깨 (참기름 포함)	630	43,686 (11,977)	29,391 (23,818)	16,435 (31,043)	25,970 (31,710)	36,576 (24,096)	5,754 (27,725)
대두 (기타)	487	9,459	8,310	8,514	8,447	7,880	2,857
팥	420.8	10,265 ( n.a. )	5,522 (7,455)	9,781 (10,578)	9,944 (11,314)	8,201 (13,002)	6,223 (13,115)
옥수수 (사료 용 및 기타)	328	907,698	636,764	298,772	659,816	135,614	337,193
고추	270	17,095	12,065	13,961	10,368	10,511	13,767
전분 (고구마)	241.2	10,004	9,738	8,258	8,692	7,485	7,627
양파 (건조/ 신선/냉장 등)	135	9,162 (745,203)	991 (933,095)	1,760 (1,073,708)	1,717 (877,514)	1,414 (935,828)	410 (872,143)
사료용 근채류	100.5	5,271	783	51	2,763	2,753	1,444

- <표5>의 인삼류, 대추, 녹두 등 12개 품목들은 2004년 양허세율 기준으로 고율관세(100% 이상)를 부과하는 품목들로서 현재까지는 중국산 수입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품목들임.

- 그러나 이 품목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WTO/DDA 협상결과에 따라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이행되거나 관세상한이 설정되는 경우 중국산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TSG제도 발동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품목임.

<표5> 관세율 100% 이상으로 중국산 수입금액이 크지 않은 품목

(단위 : 천 달러, 톤)

품 목	2004년 양허세율 (%)	연도별 수입금액, ( )안은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전분 (기타)	800.3	413	315	187	163	200	110
인삼류 (홍삼/기타)	754.3	147	235	40	6	35	0
대추	611.5	202	172	169	283	218	80
녹두	607.5	831 (n.a.)	944 (2,809)	915 (2,793)	1,018 (2,089)	1,006 (2,283)	403 (3,427)
잣	566.8	162	118	84	0	143	284
녹차	513.6	136	55	18	42	25	11
생강	377.3	2,324	4,065	5,172	1,603	220	845
마늘 (건조)	360	361	30	20	4,891	365	149
메밀	256.1	364	528	561	512	345	287
낙화생	230.5	1,111	212	1,125	1,448	831	3,459
인삼류 (수삼/백삼)	222.8	35	176	249	7	102	232
밤 (미탈각)	219.4	770	582	215	95	262	364

- <표6>의 김, 고사리, 낙화생 등 12개 품목들은 2004년 양허세율 기준으로 관세율 31%~100%를 부과하는 품목들로서 중국산 수입금액이 비교적 큰 품목임.

o 현재까지 부과했던 관세율은 중간수준이었지만 이 품목들의 중국산 수입금액이 크기 때문에 국내시장 교란가능성과 그에 따른 TSG제도 발동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품목임. 앞으로 WTO/DDA 협상결과에 따라서 관세율 감축이 이행되는 경우 이 품목들의 중국산 수입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표6> 관세율 31%~100%로서 중국산 수입금액이 큰 품목

(단위 : 천 달러, 톤)

품 목	2004년 양허세율 (%)	연도별 수입금액, ( )안은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김 (건조)	90	5,195 (n.a.)	2,454 (281,143)	1,484 (270,338)	1,467 (287,849)	981 (273,846)	101 (260,671)
고사리 (건조)	90	16,197	16,936	14,776	15,820	16,748	9,435
밤 (냉동)	72	2,858	169	960	1,531	209	0
기타견과류 (냉동)	72	9,554	10,441	5,856	5,116	5,646	0
낙화생 (조제 저장처리)	63.9	19,292	19,348	16,925	18,654	19,610	10,848
혼합토마토 제품	54	32,019	24,091	21,172	16,443	10,113	5,101
들깨씨	54	11,449	8,646	152	4,788	6,276	6,100
혼합조미료	54	12,868	14,467	14,438	11,469	10,490	9,003
당면	54	21,380	22,891	20,554	19,618	19,708	17,774
당근 (신선/ 냉장)	40.5	11,824 (124,475)	5,218 (136,109)	3,540 (153,405)	2,546 (155,137)	1,116 (151,295)	1,052 (145,491)
마늘 (조제 저장처리)	36	3,282	2,198	2,102	1,636	1,322	900
과 (건조)	54	6,200 (534,903)	5,501 (566,828)	6,108 (635,713)	4,820 (657,881)	4,458 (606,559)	4,881 (500,492)

- <표7>의 사료, 양과, 밀, 옥수수 등 17개 품목들은 중국이 WTO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인 2002년부터 중국산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한 품목들로서 TSG제도 발동가능성이 있는 품목임.

- 여기에는 옥수수(기타), 사료용 밀과 같이 수입금액이 큰 품목부터 된장, 호박(건조)과 같이 수입금액이 작은 품목까지 그리고 옥수수(기타), 양과(신선/냉장)과 같이 관세율이 100% 이상인 품목에서 밀(사료용), 대두유 추출물과 같이 관세율이 매우 낮은 품목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음.
- 많은 품목들의 경우 2002년 이후 중국산 수입이 늘어난 것은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최혜국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 품목들은 2004년 이후에도 중국산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며, WTO/DDA 협상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낮아지게 되면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임.

<표7> 2002년 이후 중국산 수입 증가폭이 큰 품목

(단위 : 천 달러, 톤)

품 목	2004년 양허세율 (%)	연도별 수입금액, ( )안은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사료(개/고양이)	18	3,856	1,004	267	45	50	0
양파(신선/냉장)	135	8,452 (745,203)	25 (933,095)	1,333 (1,073,708)	313 (877,514)	138 (935,828)	0 (872,143)
밀(사료용)	1.8	94,226	58,382	37,490	0	353	2,467
옥수수(기타)	328	167,138	105,758	24,999	53,510	2,157	3,096
된장	54	732	196	110	82	14	8
대두(종자/가루)	27	10,651	10,575	3,971	1,253	581	160
캔디류(기타)	19.7	5,794	4,742	3,024	1,452	363	124
대두유(추출물)	1.8	24,385	26,651	3,343	2,798	581	1,933
호박(건조)	54	321	230	171	154	39	11
오이류(일시저장처리)	45	1,461	1,045	498	526	160	151
당근(신선/냉장)	40.5	11,824 (124,475)	5,218 (136,109)	3,540 (153,405)	2,546 (155,137)	1,116 (151,295)	1,052 (145,491)
김(건조)	90	5,195 (n.a.)	2,454 (281,143)	1,484 (270,338)	1,467 (287,847)	981 (273,846)	101 (260,671)
송이버섯(냉동)	27	3,577	2,172	2,715	1,874	1,006	0
과실(견과/기타)	45	4,809	2,515	1,809	1,523	764	754
기타채소(신선/냉장)	27	8,027	5,646	5,266	5,555	2,972	1,383
당근(건조)	54	2,019	1,466	1,221	491	457	646
강남콩	27	1,801	1,436	1,167	1,261	1,103	740

- 위 분석결과를 보면 중국산 수입이 증가했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은 곡물은 옥수수, 밀(사료용), 대두, 팥, 메밀, 녹두, 낙화생 등이며, 채소로는 고추, 양파, 마늘(조제저장), 당근(건조), 파(건조) 등을, 임산물로



는 송이버섯(냉동), 고사리, 밤, 잣 등을, 수산물로는 김(건조), 그리고 인삼류와 당면, 사료(개/고양이) 등의 제조품임.

- 이 품목들은 중국산 수입증가로 인해 시장교란 또는 시장교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품목들에 대한 TSG제도 발동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보다 중점적으로 시장상황을 점검해야 할 것임.

#### 4. TSG 제도의 구체적 사례

- 2004년 5월 현재 중국산 수입에 대한 TSG제도의 발동현황을 살펴보면 총 7건(미국 5건, EU 1건, 인도 1건)이었으며, 이중 발동요건 부정 판정을 내린 경우가 2건, 발동요건은 긍정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3건, 실제로 TSG조치를 이행한 경우가 1건, 그리고 나머지 1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임.
- <표8>에서 보는 것처럼 TSG제도의 발동요건은 충족시키지만 실제로 TSG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는 사실(총 7건 중 3건)은 TSG제도의 경우에는 조사결과 발동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실제 조치를 취하기 전 중국과 양자협의를 거침으로써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어 실제로 TSG조치를 발동할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판단됨.
- 2002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산 축반이 액츄에이터와 철제옷걸이 수입증가로 시장교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하고 행정부에 TSG조치 발동을 건의했으나, 부시대통령은 전자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는 미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TSG조치 기각을 결정했다.

<표8> 대중국 TSG제도 발동현황 (2004년 5월 현재)

발동국가	품 목	조사개시	구제조치	기 타
미 국	축반이 액츄에이터	2002.8.19	-공정판정(2002.10.18) -조치건의(2002.11.7) -조치 기각결정(2003.1.17)	
	철제옷걸이	2002.11.27	-공정판정(2003.1.27) -조치건의(2003.2.14) -조치 기각결정(2003.4.25)	
	브레이크 작동장치	2003.6.27	-부정판정(2003.8.27)	
	철강 제관 연결구류	2003.9.5	-공정판정(2003.12.4) -조치건의(2003.12.24) -조치 기각결정(2004.3.3)	
	섬유류	2003.1.8	-부정판정(2003.12.9)	-대중국특별섬유SG
E U	조제감귤류	2003.7.11	-TRQ(2003.11.9) -조사종결(2003.12.9)	-일반SG와 병행 -잠정조치(중국산 11,389톤)
인 도	공업용 재봉바늘	2002.8.13	-조사중	

\* 아래 사례들은 대중국 TSG조치 발동신청에 대해 조사를 담당했던 미국 ITC(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보고서 4건을 요약한 것임. 미국 ITC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그리고 위원 4인으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SG, TSG, 반덤핑 등 무역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 및 필요시 행정부에 구제조치를 건의함.

### <사례1> 철제옷걸이(Certain Steel Wire Garment Hangers)

가. 개요

(1) 신청사유

중국산 철제옷걸이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 인하여 유사제품 또는 직

접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미국내 생산자에게 시장교란 또는 시장교란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2) 신청인

CHC Industries, Inc.; M&B Metal Products Co. Inc.; 그리고 United Wire Hanger Corp. 등 3개 생산회사

(3) 주요 일지

2002년 11월 27일 : 조사 신청  
2002년 12월 6일 : 공시일자  
2003년 1월 9일 : 청문회 개최  
2003년 1월 27일 : 긍정 판정  
2003년 2월 14일 : 조치 건의

나. 시장교란에 대한 ITC의 견해

(1) 결정

중국산 철제옷걸이 수입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미국내 철제옷걸이 생산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시장교란이 존재하는 것으로 긍정 판정.

(2) 조사범위

- 유사제품 및 직접 경쟁제품의 범위 : the basic shirt hanger (made from light gauge wire and generally painted white), caped hangers (covered by a paper cape that adds stability to the hanger), strut hangers (including a paper tube along the bottom of the hanger), 그리고 suit hangers (made from a wire gauge that can support a suit) 등 주로 일회용 또는 임시용 철제옷걸이.

- 시장교란요건의 충족여부 기준

- (a)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는가?
- (b)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가?
- (c) 급격한 수입증가가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중대요인인가?

여기에서 ‘중대요인’이란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에 상당부분 기여해야 하지만, 반드시 다른 요인들보다 그 기여도가 크거나 중대할 필요는 없음.

시장교란의 존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 (a) 해당제품의 수입량
- (b) 해당제품의 수입이 미국내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 (c) 해당제품의 수입이 미국내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다. 실제 조사 진행상황

(1)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의 판정

- 해당품목의 물질적 특성 : 외양에서 중국산과 국내산을 구분하기 어렵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실제 상점에서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음
- 해당품목의 관세분류 : 동일한 HTS 분류번호
- 제조공정 및 용도 : 국내산이나 중국산 모두 철사를 사용하여 유사한 공정으로 제조됨. 일부 중국산은 powder-coating 방식으로, 미국산은 dipping 방식으로 칠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중국산은 인력으로 그리고 국내산은 기계로 덮개를 씌우는 점도 다름. 그러나 세탁소 및 산업복/제복 임대용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용도 차이는 전혀 없음
- 해당품목의 판매경로 : 동일한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ITC는 the basic shirt hanger

(made from light gauge wire and generally painted white), caped hangers (covered by a paper cape that adds stability to the hanger), strut hangers (including a paper tube along the bottom of the hanger), 그리고 suit hangers (made from a wire gauge that can support a suit) 등을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으로 판정함.

## (2) 국내산업의 판정

위의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들을 국내에서 내국인을 고용하여 생산하는 8개 기업과 그 노동자들을 국내산업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

## (3) 수입의 급격한 증가여부 판정

가장 유용한 수입통계는 ITC 질문서에 대한 응답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수입에는 국내의 유사제품 생산업자의 수입도 포함됨.

- 중국산 수입량은 1997년 28.8백만 개에서 1998년 85백만 개, 1999년 130.7백만 개, 2000년 217.9백만 개, 2001년 288.7백만 개 그리고 2002년(9월까지) 405.7백만 개로 증가함.
- 국내생산량 대비 중국산 수입량 비율이 1997년 0.7%에서 1998년 1.9%, 1999년 3.0%, 2000년 5.1%, 2001년 7.0% 그리고 2002년(9월까지) 1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판정함.

## (4)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여부 판정

‘실질적’ 피해는 SG조치에서 말하는 ‘심각한’ 피해보다는 그 정도가 약한 것을 의미함. 실질적 피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생산시설의 유희상태, 적정이윤의 확보가능성, 실업율, 그리고 각종 경제지표(생산, 판매, 재고, 가동율, 시장점유율, 임금, 생산성, 이윤율, 자본지출, 연구개발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는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정.

- 산업여건 : 1997-2000년 안정적이던 산업여건이 2001년부터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2002년(9월까지)에는 국내기업의 가동율, 생산, 판

때, 시장점유율, 고용, 임금 등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진을 보임.

- 국내생산설비 : 1997년 46.8억 개에서 2000년 47.6억 개로 증가했으나 2001년 47.3억 개 그리고 2002년 9월까지 33.9억 개(전년 동기에는 37.4억 개)로 감소함.
- 가동율 : 1997년 83.2%, 1998년 82.9%, 1999년 83.9%, 2000년 81.4% 등으로 안정적이었으나 2001년에는 72.2%로 낮아지고 2002년에도 77.1%에 머물고 있음.
- 국내생산 및 판매 : 1997-2000년 안정적이었으나 2001년 급격히 감소.
- 시장점유율 : 국내 생산제품의 시장점유율이 1997년 99.3%에서 1998년 98.1%, 1999년 96.9%, 2000년 94.8%, 2001년 92.8%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에는 86.4%로 더욱 낮아짐.
- 고용 및 임금 : 1997-2000년 1,350명 수준이었던 고용이 2001년 이후에는 1,210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임금은 1997-2000년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2001년에 하락했고 2002년에는 더욱 하락함.
- 생산성 : 1997-2000년 시간당 최저 1,258개에서 최고 1,280개를 유지했던 생산성이 2001년에는 시간당 1,190개로 떨어졌으며 2002년에는 시간당 1,225개로 다소 회복함.
- 영업소득 : 1997년 4.8백만 달러, 1998년 5.8백만 달러, 1999년 4.9백만 달러 2000년 3.6백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2001년에는 2.3백만 달러의 영업손실을 그리고 2002년 9월까지 2.8백만 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함.

#### (5) 중국산 수입증가가 실질적 피해의 중대요인여부 판정

신청인들은 중국산 철제옷걸이 수입증가가 국내가격 하락과 산업여건을 악화시키는 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은 미국 생산업체들이 중국산 수입을 늘렸으며 미국내에서 중국산과 국내산 구분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수입증가와 국내산업의 여건 악화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함.

철제옷걸이는 세탁업자 및 산업용/제복 임대업자에게 일회용품으로 간주되고, 원산지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음. 옷걸이 수요는 전반적인 경기와 유행 등의 영향을 받는데 2000년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약간의 감소를 보임.

- 중국산 수입량 :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 28.8백만 개에서 2001년 288.7백만 개로 그리고 2002년 9월까지 이미 405.7백만 개를 급격히 증가함. 시장점유율에서도 1997년 1.0%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12.9%로 늘어남.
- 국내가격 : 국내 6개 품목의 생산업자가 보고한 분기별 판매가격(1997년 3월 - 2002년 9월)에 따르면 국내판매가격은 1999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2년 3분기까지 약 20~35% 떨어짐. 6개 품목 중에서 예외적으로 16인치 strut옷걸이는 가격하락이 없었는데, 이 제품은 중국산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품목임. 판매가격이 낮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중국산 옷걸이가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지역별 가격차이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위원회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음.
- 전반적 경기부진으로 옷걸이 수요가 다소 감소했다는 점, 국내 생산업자들이 중국산 옷걸이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중국산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가져온 중대요인이라는 점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정. 수요부진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중국산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16인치 strut옷걸이 시장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음.
- 판매된 옷걸이 1개당 생산비는 1999-2000년 3.0% 그리고 2001-2002년 4.2%의 소폭 점진적 증가를 보였기 때문에 생산비가 국내산업여건 악화의 중대요인은 아님. 따라서 중국산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가격하락이 그 중대요인임.

#### (6) 조사결과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중국산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 철제옷걸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시장교란 사실이 존재한다는 신청인에 대해 긍정 판정을 내림.

특히 2001년 그리고 2002년 9개월 동안의 대폭적인 수입증가는 국내산업 여건을 급격히 악화시킴. 중국산 수입증가는 2001년 이후 국내산업의 생산량 및 판매량 감소, 가격하락,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

라. ITC 건의사항

(1) 건의 조치내용

조사에 참가한 위원들 중에서 중국산 철제옷걸이의 시장교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위원들만이 구제조치를 건의함.

- ITC는 행정부로 하여금 중국산 철제옷걸이 수입에 대해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추가적 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함: 첫 1년 동안은 25%, 다음 1년 동안 20%, 그리고 마지막 1년 동안 15%.
- 또한 상무성과 노동성에 대해서는 국내 철제옷걸이 생산업자와 노동자에 대해서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요청에 특별히 고려해 줄 것을 건의함.
- 신청인은 철제옷걸이 개당 1.85센트 (1999년 중국산 수입가격 기준으로 약 50%) 종량세를 5년 동안 부과해 줄 것으로 요청함. 신청인들이 쿼타제 실시 대신 추가적 관세부과를 요청한 것은 만약 쿼타제를 실시하게 되면 수입업자들이 우회통관의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거나 및 쿼타물량을 급속히 소진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시장교란을 더욱 크게 할 가능성을 염려했기 때문임.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요구사항은 시장교란을-만약 시장교란이 존재한다고 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도-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함.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추가적 관세를 부과하기 보다는 무역조정지원을 이용하여 또는 미국 상무성에서 반덤핑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함.



- ITC는 이러한 조치들이 미국내 생산업계의 판매 및 가격여건을 향상시킬 것이며 적절한 수준의 이윤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이는 해당 품목의 가격상승, 국내 생산업자들의 새로운 시장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 그리고 현대적 생산설비 확충으로 수입품과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결과가 예상됨. 중국산 철제옷걸이 수요자(대부분이 세탁업자)에게는 결과적으로 비용을 상승시키지만, 철제옷걸이가 세탁업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임.
- 만약 이 조치가 없다면 국내 생산업자들의 영업손실은 더욱 악화될 것임. 중국산 철제옷걸이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계속 높아질 것이며, 수입도 계속 늘어날 것임. 장기적으로는 국내산업의 상당부분이 문을 닫을 것이고,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의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임.

## (2) 건의 조치에 대한 소수의견

- Lynn M. Bragg 위원 : 구제조치는 2년이면 충분하며, 처음 1년은 20% 그리고 나머지 1년은 15%의 추가적 관세부과를 건의함.
- Stephen Koplan 위원 : 구제조치로 3년 동안 30%의 추가적 관세부과를 건의함. 또한 상무성과 노동성은 관련업계 및 관련노동자들의 무역조정신청에 대해 특별히 고려할 것을 건의함.

## <사례2> 철강 제관 연결구류 (Ductile Iron Waterworks Fittings)

### 가. 개요

#### (1) 신청사유

중국산 철강 제관 연결구류(DIWF: Ductile Iron Waterworks Fittings)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 인하여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미국내 생산자에게 시장교란 또는 시장교란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 (2) 신청인

McWane, Inc. (Clow Water Systems Co., Tyler Pipe Industries, Union Foundry Co. 등 3개 회사를 직간접적으로 소유), American cast Iron Pipe Co. 그리고 U.S. Pipe and Foundry Co. 등 3개 기업

- 미국에서 DIWF를 생산하는 나머지 1개 기업인 Griffin Pipe Products사는 신청인에 포함되지 않음.

## (3) 주요 일지

- 2003년 9월 5일 : 조사 신청
- 2003년 10월 20일 : 잠정조치 기각
- 2003년 12월 4일 : 긍정 판정
- 2003년 12월 24일 : 조치 건의

### 나. 시장교란에 대한 ITC의 견해

#### (1) 결정

2000년 이래 중국산 DIWF(철강 제관 연결구류) 수입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미국내 DIWF 생산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시장교란이 존재함.

#### (2) 조사범위

- 유사제품 및 직접 경쟁제품의 범위 : 철강 제관 연결구(중량 기준으로 카본 2.5%, 마그네슘과 세륨을 0.02% 이상 함유)로서 파이프, 밸브, 소화전 등을 연결하거나 물이나 하수의 흐름을 변경, 분리, 유도하는데 이용됨.
- 시장교란요건의 충족여부 기준

- (a)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는가?
- (b)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가?
- (c) 급격한 수입증가가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중대요인인가?

여기에서 ‘중대요인’이란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에 상당부분 기여해야 하지만, 반드시 다른 요인들보다 그 기여도가 크거나 중대할 필요는 없음.

시장교란의 존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 (a) 해당제품의 수입량
- (b) 해당제품의 수입이 미국내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 (c) 해당제품의 수입이 미국내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 다. 실제 조사 진행상황

##### (1)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의 판정

- 해당품목의 물질적 특성 : 국내산은 물론 중국산 제품도 水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AWWA(American Waterworks Association)/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기준에 따라 제작되었기 때문에 상호교체가 가능함. 해당품목은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 부식 방지, 유연도 등에서 다른 철재 연결구와 구별됨.
- 해당품목의 관세분류 : 형태와 크기는 다양하지만 모두 하나의 HTS 분류번호에 포함됨.
- 제조공정 및 용도 : DIWF는 주물과 마무리(선반작업과 코팅)의 두 가지 작업과정을 거치는 데 국내산이 다소 자동화가 되었으나 중국산과 유사한 공정으로 제조됨. 그러나 어느 회사도 1,500 종류에 달하는 DIWF를 모두 생산하지는 않으며, 크기가 작은 제품 또는 큰 제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함. 용도에 있어서 국내의 6개 생산기업 전부와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11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자사제품을 타사제품과 상호 구분없이 사용할 수고 있다고 보고함.
- 해당품목의 판매경로 : 국내산과 중국산의 90%는 ‘waterworks houses’라 불리는 유통업자를 통해 거래되며, 나머지 10%는 지역의 수자원관리 기관 또는 건설업자에게 직접 판매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ITC는 파이프, 밸브, 소화전 등을 연결하거나 물이나 하수의 흐름을 변경, 분리, 유도하는데 이용되는 철강 제관 연결구(중량 기준으로 카본 2.5%, 마그네슘과 세륨을 0.02% 이상 함유)를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으로 판정함.

## (2) 국내산업의 판정

위의 DIWF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5개 기업(Clow, Tyler, Union, ACIPCO, U.S. Pipe)과 1998-99년 동안 DIWF를 생산한 Griffin 등 6개 기업들이 국내산업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

## (3) 수입의 급격한 증가여부 판정

- 신청인은 중국산 DIWF 수입이 2000-2002년 동안 67.9% 그리고 2003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생산과 소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
- 피신청인은 중국이 (2001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WTO에 가입한 2001년 12월 이후 중국산 DIWF 수입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 위원회는 중국산 DIWF 수입이 2002년에는 2000년에 비해 69.7% 증가했고, 2003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71.5% 늘어났다는 사실에서 중국산 DIWF 수입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판정.
- 국내생산량 대비 중국산 수입량 비율이 1998-2002년 동안 2배로 증가했으며, 2003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4.8% 포인트 늘었음.

## (4)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여부 판정

‘실질적’ 피해는 SG조치에서 말하는 ‘심각한’ 피해보다는 그 정도가 약한 것을 의미함. 실질적 피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생산시설의 유희상태, 적정이윤의 확보가능성, 실업율, 그리고 각종 경제지표(생산, 판매, 재고, 가동율, 시장점유율, 임금, 생산성, 이윤율, 자본지출, 연구개발비) 등을 전반적으로

로 고려하여, 위원회는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정.

- 산업수요 : DIWF 수요는 물 및 하수 파이프 건설수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규주택 및 기타 건축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자료에 따르면 DIWF 수요는 1998-99년 5.95, 1999-2000년 2.2%, 2000-01년 1.6%, 2001-02년 2.7%, 그리고 2002(상반기)-03(상반기) 4.9% 증가함.
- DIWF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DIWF 생산업체들은 조사기간 동안 영업손실을 기록했음.
- 국내생산설비 및 가동율 : 조사기간 동안 공장폐쇄 1건, 생산감축 2건 등 국내생산은 급격하게 감소함. 2003년 4월에는 U.S. Pipe사가 Alabama주 Anniston 공장을 폐쇄하고 Tennessee주 Chattanooga공장에서 생산을 감축했으며, 동년 8월 McWane사는 Union foundry공장에서 생산을 감축했음.
- 연구개발비와 자본지출 : 조사기간 동안 연구개발비는 약간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자본지출 감소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임. 자본지출은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했으며, 2003년 상반기에는 더욱 낮아짐.
- 미국 ITC의 보고서에 생산량, 시장점유율, 영업소득, 자본지출, 연구개발비 등이 \*\*\*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비밀보호 목적인 듯) 구체적 수치를 알 수 없음.

#### (5) 중국산 수입증가가 실질적 피해의 중대요인여부 판정

중국산 DIWF 수입의 급격한 증가와 국내가격의 하락 그리고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정. 환경, 안전, 노동자 보상 등으로 인하여 생산비용이 증가한 것이 국내산업의 각종 지표(영업이익, 생산, 임금, 고용 등)를 나쁘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지만, 중국산 DIWF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시장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 가장 중대한 요인임.

- 중국산 DIWF 수입량 : 2000년 14,768 톤, 2001년 24,404 톤, 2002년

2.7% 증가한 25,070 톤 그리고 2003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1.85 증가한 14,022 톤임.

- 국내소비에서 중국산 DWIF 비중 : 1999년 11.4%, 2000년 16.0%, 2001년 17.5%, 그리고 2002년에는 17.5%로 증가함. 2003년 상반기에는 17.9%로 더욱 커짐. 2000년의 경우 국내산 제품이 잃어버린 국내소비 10.4% 포인트의 약 60%에 해당하는 6.1% 포인트가 중국산 DWIF로 전환되었음.
- 국내가격 : 중국산 DWIF 가격은 2001년 이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국내산 DWIF 가격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되었음. 국내산 DWIF 생산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수입증가로 가격을 인상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함.

#### (6) 조사결과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중국산 DWIF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시장교란 사실이 존재한다는 신청인에 대해 긍정 판정을 내림.

중국산 수입증가가 국내판매를 대신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은 생산감소, 판매 및 고용 축소 그리고 빈약한 영업실적 등을 초래함.

#### 라. ITC 건의사항

##### (1) 건의 조치내용

- ITC는 행정부로 하여금 중국산 DWIF 수입에 대해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관세할당제(TRQ)를 실시할 것을 건의함: 첫 1년 동안은 14,324 톤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 현행 세율에다 50% 추가 관세를 부과, 다음 1년 동안은 15,938톤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 현행세율에다 40% 추가 관세를 부과, 그리고 마지막 1년 동안은 16,553 톤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에다 30% 추가 관세를 부과.
- 또한 상무성과 노동성에 대해서는 국내 DWIF 생산업자와 노동자에 대해

서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요청에 특별히 고려해 줄 것을 건의함.

- 신청인은 중국산 DIWF에 대해 5년 동안 (첫 해에는 종가세율 95%에 상응하는) 수량제한조치(쿼타제)를 요구했으며, 피신청인은 중국산에 대한 수량제한조치는 결과적으로 제3국에서 생산한 DIWF 수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반박함.
- ITC는 이러한 구제조치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지만, 시장교란은 제거할 것으로 기대함. 쿼타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한 것은 수요가 매년 2.5% 정도 성장할 것이고 국내산업도 구조조정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 (2) 건의 조치에 대한 소수의견

- Jennifer A. Hillman 부위원장 : 구제조치는 3년 동안 수량제한조치(쿼타제)가 적절하며, 처음 1년은 14,324 톤, 다음 1년은 15,398 톤 그리고 나머지 1년은 16,553 톤으로 정할 것을 건의함.

## <사례3> 축반이 액츄에이터 (Pedestal Actuators)

### 가. 개요

#### (1) 신청사유

중국산 축반이 액츄에이터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 생산자에게 시장교란 또는 교란우려를 초래하고 있음.

이 건은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에 대해서 TSG제도 및 미국무역법 제421조(2000년 신설조항) 발동을 요구하는 최초의 신청임.

#### (2) 신청인

미국내 축반이 액츄에이터 생산업체인 Motion Systems Corporation.

### (3) 주요 일지

- 2002년 8월 19일 : 조사 신청일
- 2002년 10월 18일 : 긍정 판정
- 2002년 11월 7일 : 구제조치 건의

#### 나. 시장교란에 대한 ITC의 견해

##### (1) 결정

중국산 축반이 액츄에이터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시장교란이 존재하는 것으로 긍정 판정.

##### (2) 조사범위

- 유사제품 및 직접 경쟁제품의 범위 :

수입 당시에 모터를 부착했건 안했건 관계없이 전자기계식 선형액츄에이터로 이루어진, 그리고 올리거나 내리고 혹은 밀거나 당기는 데 사용되는 스쿠터 부속품. 주로 좌석을 올리거나 내리는 목적으로 스쿠터에 사용됨.

- 시장교란요건의 충족여부 기준

- (a)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는가?
- (b)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가?
- (c) 급격한 수입증가가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중대요인인가?

여기에서 ‘중대요인’이란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에 상당부분 기여해야 하지만, 반드시 다른 요인들보다 그 기여도가 크거나 중대할 필요는 없음.

시장교란의 존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 (a) 해당제품의 수입량
- (b) 해당제품의 수입이 미국내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의 가격에 미치



는 영향

- (c) 해당제품의 수입이 미국내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 다. 실제 조사 진행상황

##### (1)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의 판정

- 물리적 특성 : 다른 형태의 국산 선형엑츄에이터를 제외하면 국내산 및 중국산 축받이 엑츄에이터는 확장튜브를 지지하는 베어링, 평평한 상부, 반회전용 확장튜브 등 물리적 특성이 동일함
- 생산공정 및 설비 : 축받이 엑츄에이터 생산과정에는 상당부분 특수 조립이 필요하고, 별도의 노동력과 기술이 필요함
- 용도 : 국산 및 수입 축받이 엑츄에이터 대부분이 좌석을 올리거나 내리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한편, 다른 형태의 선형엑츄에이터는 운동용 장비 또는 사무용품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됨
- 판매경로 : 국산 및 중국산 공히 스쿠터 조립업체에 주문을 받아 OEM방식으로 생산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산 축받이 엑츄에이터 만을 유사제품 및 직접 경쟁제품으로 결정함. 본 조사에서 축받이 엑츄에이터는 전자기계식 선형엑츄에이터로서 올리거나 내리는 데 또는 밀거나 당기는 데에 사용되는 스쿠터 부속품임. 직류 또는 교류 전기를 사용하며, 회전력을 직선운동으로 변환시키는 기어감속기를 통해 나사를 돌리는 장치임. HTS 분류에서 8501에 속하는 품목과 8483.40.50 그리고 8483.40.80에 속하는 품목임.

##### (2) 국내산업의 판정

Motion Systems, Amigo Mobility 그리고 Moran 등 3개 국내기업이 축받이 엑츄에이터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으로 판정됨.

- Motion Systems는 본 조사의 신청인으로서 공개시장에서 축반이 액츄에이터를 생산, 판매하는 주요 생산업체이며, Amigo Mobility는 내부용 축반이 액츄에이터를 생산함. Moran은 Motion Systems의 일정 조립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고급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작업임.

### (3) 수입의 급격한 증가여부 판정

1997-2000년 동안에는 중국산 축반이 액츄에이터 수입실적이 전혀 없었으나 2001년부터 수입이 시작되었고 2002년 상반기에는 더욱 늘어남. 조사기간 동안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판정.

- 미국 ITC의 보고서에 수입실적 등이 \*\*\*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비밀보호 목적인 듯) 구체적 수치를 알 수 없음.

### (4)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여부 판정

미국내 스쿠터 및 전동자 OEM 제조업체인 Electric Mobility사는 2001년부터 축반이 액츄에이터 구입선을 Motion Systems사에서 중국의 CIM(CCL Industrial Motor Ltd.)사로 변경했음.

1997년부터 2001년 초까지 국내산업은 견실했으나, 2001년부터 각종 지표(생산, 판매, 시설가동율, 점유율, 고용, 노동생산성, 영업소득, 현금흐름, 자본지출, 연구개발비 지출 등)가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2002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더욱 악화되었음.

- 미국 ITC의 보고서에 생산량, 시장점유율, 영업소득, 자본지출, 연구개발비 등이 \*\*\*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비밀보호 목적인 듯) 구체적 수치를 알 수 없음.

### (5) 중국산 수입증가가 실질적 피해의 중대요인여부 판정

- 신청인은 중국산 축반이 액츄에이터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중대하고도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 유일한 이유이며, 신청인의 시장점유율 감소가

그대로 중국산의 점유율 증가로 이어지고 저가의 중국산 수입으로 인해 국내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함. 특히 Electric Mobility사가 중국산으로 구입선을 변경한 이유는 오로지 가격 때문이라고 주장.

- 피신청인은 Electric Mobility사가 중국산으로 구입선을 변경한 것은 신청인이 만든 축반이 액츄에이터가 품질, 배달, 대량구매에도 할인판매를 하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
- 수입량, 수입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영향,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산 축반이 액츄에이터가 국내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장점유율, 국산과 중국산의 판매가격 차이, 국내산업여건(생산, 판매, 시설가동율, 시장점유율, 고용, 노동생산성, 영업소득, 현금흐름, 연구개발비, 자본지출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01년 이후 국내산업이 악화되고 있는 요인으로 중국산의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이 외에는 찾을 수 없다고 판정.

#### (6) 조사결과

중국산 축반이 액츄에이터 수입 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시장교란이 존재하는 것으로 신청인에 대해 긍정 판정.

라. ITC 건의사항

#### (1) 건의 조치내용

중국산 축반이 액츄에이터 수입에 대해 3년 동안 수량제한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부에 건의함: 처음 1년은 5,626개, 다음 1년은 6,470개 그리고 마지막 1년은 7,440개로 수입을 제한.

-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앞으로 미국내 수요가 (증가율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 현재까지는 Electric Mobility사가 중국의 CIM사에서 축반이 액츄에이터를 구입하는 것이 중국산 축반이 액츄에이터가 수입되는 유일한 경우임. Electric Mobility사에서 생산하는 스쿠터는 한국, 대만, 중국에서 생산 수입된 스쿠터와 경쟁관계에 있음.

- 신청인은 처음에는 (1) 모조품 또는 매우 유사하지만 결함이 있는 중국산 축반이 액츄에이터의 수입금지 (2) 국산과 경쟁관계에 있고 유사한 중국산 축반이 액츄에이터의 수입을 국내소비의 10%까지만 허용하는 수량제한조치를 요구했으나, 2002년 10월 7일 향후 3년 동안 국내소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만을 인정하는 수량제한조치로 요구사항을 변경함.
- 피신청인은 품질, 배달 등을 영업여건을 고려하여 Electric Mobility사가 CIM사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구제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함.
- 쿼타를 설정함에 있어 기준년도를 2001년으로 그리고 기간은 신청인이 요구한 3년으로 결정했으며, 그리고 쿼타수량을 매년 15%씩 증가시킴.

## (2)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

### - Deanna Tanner Okun 위원장

중국산 축반이 액츄에이터 수입이 초래하는 시장교란은 없는 것으로 판단. 신청인은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재무관련자료들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매수입, gross 이윤,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시장교란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조치는 불필요함. 신청인은 중국산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을 통해 종전의 고객(Electric Mobility사)로 하여금 자사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 Lynn M. Bragg 위원

중국산 축반이 액츄에이터 수입은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 요인이라고 볼 수 없음. Electric Mobility사에서 축반이 액츄에이터 구입선을 Motion Systems사에서 중국의 CIM사로 변경한 것은 기업경영상 결정이며, 따라서 CIM사가 자사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미국시장을 침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인 Electric Mobility사와의 계약이행을 위한 것임.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수 위원들이 결정하여 행정부에 건의한 구제조치에 반대함.

## <사례4> 브레이크 작동장치 (Certain Brake Drums and Rotors)

### 가. 개요

#### (1) 신청사유

중국산 브레이크 작동장치(aftermarket brake drums and rotors)의 수입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시장교란 또는 시장교란의 우려가 발생함.

#### (2) 신청인

미국 브레이크 작동장치 제조업체 연합 (Coalition for the Preservation of American Brake Drum and Rotor Aftermarket Manufactures)

#### (3) 주요 일지

2003년 6월 6일 : 조사신청일

2003년 6월 16일 : 공시일자

2003년 6월 18일 : 공개청문회

2003년 8월 27일 : 부정 판정

### 나. 시장교란에 대한 ITC의 견해

#### (1) 결정

중국산 브레이크 작동장치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에게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시장교란 또는 시장교란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부정 판정.

조사기간 동안 국내생산업체들은 건전한 이윤을 얻었고, 최근 좋아지는 추세에 있었음. 기업의 이윤을 살펴보면 2000-2001년에 가장 부진했으나 2002년에는 두드러지게 향상되고 있음.

## (2) 조사범위

- 유사제품 및 직접 경쟁제품의 범위 :

회색 cast iron으로 만들어진 직경 8-16인치, 무게 8-45파운드의 certain brake drums and rotors로서 승용차와 1.5톤 이하의 경트럭, 밴 및 레저용 차량에 사용되는 것.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들(GM, Ford, Toyota, Honda, Volvo 등)에 최초장착제품(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으로 판매된 것들은 제외함. brake drums와 rotors는 자동차회사에서 출고할 때 자동차에 장착되는 OEM제품이면서, 또한 일정기간 사용 후에는 "aftermarket"에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품임. 본 조사범위에 속하는 것은 OEM제품을 제외하고 aftermarket에서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brake drums와 rotors임.

- 시장교란요건의 충족여부 기준

- (a)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는가?
- (b)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가?
- (c) 급격한 수입증가가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중대요인인가?

여기에서 ‘중대요인’이란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에 상당부분 기여해야 하지만, 반드시 다른 요인들보다 그 기여도가 크거나 중대할 필요는 없음.

시장교란의 존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 (a) 해당제품의 수입량
- (b) 해당제품의 수입이 미국내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 (c) 해당제품의 수입이 미국내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다. 실제 조사 진행상황

(1)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의 판정

물리적 특성, 관세상 분류, 생산과정과 시설, 용도, 판매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로 고려할 때 국내산 aftermarket brake drums와 rotors는 모두 중국산과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으로 판정. 그러나 OEM제품의 경우에는 대체 사용이 어렵고, 판매경로, 가격 및 소비자 인지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산의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이 아닌 것으로 판정.

회색 cast iron으로 만들어진 직경 8-16인치, 무게 8-45파운드의 certain brake drums and rotors로서 승용차와 1.5톤 이하의 경트럭, 밴 및 레저용 차량에 사용되는 것.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들(GM, Ford, Toyota, Honda, Volvo 등)에 최초장착제품(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으로 판매된 것들은 제외함. brake drums와 rotors는 자동차회사에서 출고할 때 자동차에 장착되는 OEM제품이면서, 또한 일정기간 사용 후에는 "aftermarket"에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품임. 본 조사범위에 속하는 것은 OEM제품을 제외하고 aftermarket에서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brake drums와 rotors임. 수입 제품은 관세상(HTS) 분류가 8708.39.50이며, 일반관세율은 2.5%임.

- 피신청인(Qualis Automotive사)은 중국산은 저가품(economy-line) 그리고 국내산은 고급제품(premium-line)으로 aftermarket에서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고 소비자도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aftermarket brake drums와 aftermarket brake rotors는 다 같이 브레이크에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어 동일한 판매경로를 거쳐 유통되지만, 두 가지의 구별되는 제품들임. 전자는 사발모양으로 주로 뒷바퀴에 사용되고, 후자는 자동차를 정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브레이크패드와 같이 사용됨.

## (2) 국내산업의 판정

국내산업에 속하는 생산자는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을 생산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생산하는 기업과 그 노동자로 정함. 이러한 기준으로 위원회는 aftermarket brake drums을 생산하는 5개 기업과 aftermarket brake rotors를 생산하는 6개 기업을 각각 별개의 국내산업으로 판정함.

### (3) 수입의 급격한 증가여부 판정

신청인은 2003년 중국산 aftermarket brake rotors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18.8%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기간 동안 중국산 수입이 감소하거나 안정적인 기간이 없다고 주장함. 또한 신청인은 이러한 중국산의 수입증가 추세가 2-3년 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은 중국산 수입이 지속적이고 적절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입의 급격한 증가는 아니라고 주장함. 그리고 TSG제도는 중국이 WTO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인 2001년 12월부터 인정된 것인데, 해당품목은 2001년 12월 이후에 오히려 그 증가추세가 약해졌다고 주장함.
- 중국산 aftermarket brake drums 수입을 국내생산과 소비와 비교하면 2003년에 전년동기 대비 실제 증가하고 있음. 처음 1년간은 중국산 수입이 413,000개 증가하고 이후 3년 동안 수입은 매년 200,000개 이상 증가함으로 인해 조사기간 동안 중국산 수입은 2배 이상이 되었고, 최근 2년간 30% 증가했음. 그 결과 중국산 수입품은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판정.
- 미국 ITC보고서에는 (기업의 비밀보호 목적인 듯) 국내생산에 대한 비중은 \*\*\*% 포인트, 국내소비에서의 비중은 \*\*\*% 포인트 증가 등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음.

중국산 aftermarket brake rotors 수입은 1998-200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30% 이상 늘었으며, 2003년에도 전년동기 대비 18.8% 증가하고 있음. 그 결과 중국산 수입품은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판정.

- 미국 ITC보고서에는 (기업의 비밀보호 목적인 듯) 국내생산에 대한 비중은 \*\*\*% 포인트, 국내소비에서의 비중은 \*\*\*% 포인트 증가 등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음.



#### (4)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여부 판정

- 앞에서 결정한 것처럼 국내산업에 속하는 5개의 aftermarket brake drums 생산자와 6개의 aftermarket brake rotors 생산자로부터 1998-2002년 그리고 2002년 1-3월과 2003년 1-3월 기간 동안의 재무 및 기타 자료들을 받아 검토함. 해당품목에 대한 수요는 보증수리기간이 끝난 자동차에 장착된 brake drum이나 rotor가 닳아서 바꿀 때 발생함.
-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품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은 것으로 판정. 해당품목에 대한 수요증가는 연간 평균주행거리는 안정적이지만 조사기간 동안 운행자동차 수가 늘어났고, (중전보다 작고 가벼운 brake drums를 사용함에 따라 자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 1대당 사용하는 rotors 수가 두드러지게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11.1%에서 13.7%까지) 늘어났기 때문임.
- 국내시장에서 국내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시장의 확대되는 부분을 수입제품들이 차지하기 때문이지 수입제품이 국내산 제품을 대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님.
- 미국의 aftermarket brake drums 산업은 조사기간 동안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지만 매년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생산설비 및 국내생산도 조사기간 초반에는 (1999년 Dana사와 Federal Mogul사의 폐업으로 인해) 감소했으나 이후 안정적이었고, 국내산 제품의 시장점유율과 국내산업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1999년에는 2개 기업이 폐업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매년 영업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생산설비, 판매가격, 재고수준, 연구개발비 지출액 등이 안정세 또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정.
- 미국의 aftermarket brake rotors 산업도 aftermarket brake drums 산업과 마찬가지로 (1999년 Dana사와 Federal Mogul사의 폐업을 제외하면) 매년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생산설비 및 국내생산도 1999년 이후 안정적이었고, 국내산 제품의 시장점유율과 국내산업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로 감소함. 생산설비, 판매가격, 재고수준, 연구개발비 지출액 등이 안정세 또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정.

- 미국 ITC보고서에는 (기업의 비밀보호 목적인 듯) 국내수요 증감은 \*\*\*% 포인트, 영업이익은 \$\*\*\*, 국내생산량 \*\*\*개, 시장점유율 \*\*\*% 등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음.

#### (5) 조사결과

중국산 aftermarket brake drums와 aftermarket brake rotors 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시장교란 또는 시장교란의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정판정을 내림.

## 5. TSG제도의 활용방안

### 가. TSG제도 활용가능성

- 현재의 농산물SSG제도는 UR합의에 따라 2004년 말까지 존속하는 것은 물론 WTO/DDA협상이 시나리오 I에 의하여 합의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차기이행기간으로 예상되는 2008년 1월 1일까지는 존속가능하며, 2005년 이후 그 존속여부도 현재 WTO/DDA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임.
- o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채택한 농업부문협정 Modality framework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농산물SSG제도는 2005년 이후 일정기간 동안 즉 차기 이행기간까지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개도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SSM제도를 신설하기로 하였음.
- o 우리나라 농업은 국제경쟁력이 낮아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들이 많고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이 수요와 공급 모두 가격비탄력적이기 때문에 SSG제도에 의한 긴급관세부과로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대중국 농산물수

입에 대한 산업피해구제는 1차적으로 수량제한이 가능한 SG제도 또는 TSG제도를 활용하고 SSG제도에 의한 긴급관세부과는 부수적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SG제도는 비농산물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GATT(1994)협정 제19조 및 WTO세이프가드협약에 따르면 수입국은 조치발동 후 이해관계국과 보상협상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해관계국과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상대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
- o 99년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와 중국의 보복조치 그리고 한중간 협의결과 등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음.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무역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은 해당품목만이 아닌 수출입 전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다양한 형태의 보복조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선택이 요구됨. 다만 이제는 중국이 WTO 회원국이 된 이상 농업 외 타분야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조치는 취하기 어렵게 되었음.
- 한편 중국산에 대한 TSG제도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이 시장교란의 경우 발동이 가능하여 SG제도보다는 그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으며, 세이프가드조치발동 전에 양자협의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음.
- TSG제도는 2013년 12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적 제도라는 한계가 있음. 그리고 SG제도와는 달리 TSG제도의 발동이 수입의 상대적 증가로 인한 경우에는 2년, 수입의 절대적 증가로 인한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하면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어, 실제로 TSG조치 기간은 2/3년을 초과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음.

#### 나. TSG제도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

-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에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본격적인 시장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내농업의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입농산물 특히 중국산 수입농산물에 대해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함.

- 앞으로 WTO/DDA협상이 타결되면 수입농산물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며, 관세율이 낮아지게 되면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임.
- 국내농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중국산 농산물수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201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TSG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산 농산물 수입현황에 대한 분석결과와 WTO/DDA협상에 대한 전망, 2004년 쌀협상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앞으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관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TSG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o 이를 위해서는 TSG제도 활용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TSG제도 발동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의 집중적 관리가 필요함.

#### (1) TSG조치 발동요건의 명확화

- TSG조치 발동요건인 시장교란요건 또는 무역전환요건에 대해서 보다 명백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이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이 발생하면 즉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도록 함.
- o 시장교란요건으로는 품목별, 시기별 기준시장가격을 정하고 수입가격이 기준시장가격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30%를 기준으로 하되 품목별 연간 가격변동 폭을 고려하여 차등을 둬) 이하로 떨어져 국내가격을 낮추는 경우이거나 중국산 수입물량이 해당품목 국내생산량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10%를 기준으로 하되 품목별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크면 낮게 그리고 가격탄력성이 작으면 높게 차등을 둬) 이상으로 증가하여 공급증가에 따라 국내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에 TSG조치 발

동여건 해당여부 조사를 신청하도록 함.

- 무역전환요건으로는 제3국이 TSG조치를 발동했다는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국이 TSG조치 발동사실을 WTO SG위원회에 보고하면 주WTO 대표부에서는 이 사실을 즉시 국내 관련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함.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은 해당품목의 국내시장동향을 파악하여 중국산 수입량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증가하여 국내시장 교란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에 TSG조치 발동여건 해당여부 조사를 신청하도록 함.
- 위에서 언급한 TSG조치 발동요건을 명백화를 위해서는 기존 통계 및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단체에서는 품목별 국내 생산량과 수요량, 국내수요의 가격탄력성, 시기별 가격변동 폭 등에 대한 보완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2)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 중국산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TSG제도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농산물의 국내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통계자료는 물론 기간별 (예를 들면 1주일 또는 15일 간격으로 등) 중국산 통관수량, 국내산 출하량 및 주요 농산물시장의 가격동향, 생산자단체의 매출과 손익 및 해당농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함. 현재 활용 가능한 자료로는 일부 품목의 국내생산량과 중국산 통관수량, 가격동향 등에 불과한 실정임.
- 농업관측조사를 통해 국내생산(예상)량을 파악하고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예상)량 수준에 따라 해당품목의 시기별 (예상)기준가격을 추정함. 이를 통해 수입물량이 국내생산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으로 늘어나면 해당품목의 시장가격이 얼마나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 예상시장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TSG조치 발동을 검토함.
- 해당품목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국내생산(예상)량과 비교하여 일정비율 이상으로 수입물량이 늘어날 경우 일정수

준 이상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므로 TSG조치 발동을 검토함.

- 양파, 고추 등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이 특정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국내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TSG조치를 발동하더라도 필요한 때에 즉시 발동하지 못한다면 그 효과가 감소될 것임. 이러한 경우 적시에 TSG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업관측조사를 통해 국내 생산량 및 출하량에 대한 예측은 물론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수입량 변화가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생산자단체는 시장교란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매출 및 손익 변동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함.
- o 기존 국내생산량 통계, 수입통계, 가격정보 등의 자료를 이용해서는 중국산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가 국내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TSG제도 발동요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하게 되면, 무역위원회로부터 발동요건 긍정판정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TSG조치 발동 전 60일간 중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중국의 대응조치를 통해 시장교란을 해소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TSG조치 없이도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3) 품목별 우선순위

-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390여개 전 품목에 대해 수입량, 국내생산량, 출하량 및 가격동향 등을 1주 단위 또는 15일 단위로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하기는 실제로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TSG제도 활용가능성이 높은 일부 품목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함.
- WTO/DDA 협상의 진행상황을 고려할 때 협상타결에 따른 새로운 관세감축은 2008년 이후에나 이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최소한 2007년까지는 현행의 관세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중국산 농산물 수입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으로는 2002년 이후 중국산 농산물 수입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표7>의 17개 품목을 들 수 있음. 17개

품목 중에서 국내생산량이 많지 않은 품목들을 제외한 12개 품목[양파(신선/냉장), 옥수수(기타), 된장, 대두(종자/가루), 대두유(추출물), 호박(건조), 오이류(일시저장처리), 당근(신선/냉장), 김(건조), 송이버섯(냉동), 과일(건과/기타), 강낭콩]에 대해서 생산량, 소비량 및 가격동향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다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품목은 2004년 양허관세수준이 31% 이상으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금액이 비교적 큰 <표4>의 8개 품목 중에서 국내생산량이 많지 않은 품목들을 제외한 6개 품목[참깨(참기름 포함), 대두(기타), 팥, 고추, 전분(고구마), 양파(건조/신선/냉장)]과 <표6>의 12개 품목 중에서 국내생산량이 많지 않은 품목들을 제외한 9개 품목[김(건조), 고사리(건조), 밤(냉동), 낙화생(조제/저장/처리), 들깨씨, 당면, 당근(신선/냉장), 마늘(조제/저장처리), 파(건조)] 등 15개 품목임.
- WTO/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대비하여 중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품목은 2004년 양허세율이 100% 이상인 <표4>의 8개 품목 중에서 6개 품목[참깨(참기름 포함), 대두(기타), 팥, 고추, 전분(고구마), 양파(건조/신선/냉장)]과 <표5>의 12개 품목[(전분기타), 인삼류(홍삼/기타), 대추, 녹두, 잣, 녹차, 생강, 마늘(건조), 메밀, 낙화생, 인삼류(수삼/백삼), 밤(미탈각)] 등 18개 품목임. 이 품목들은 WTO/DDA 협상이 타결되면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예상되는 품목으로서 협상진행에 따라 차기이행기간으로 예상되는 2008년 또는 2009년 이후에 중국산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임.

#### (4) 2004년 쌀협상에서의 활용가능성

- TSG제도를 중국산 수입농산물 관리에 활용하는 것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쌀협상에 활용하여야 함. 중국은 우리나라가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수출가능물량, 가격경쟁력 등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임. 현재 쌀협상에서는 중국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TSG제도를 쌀협상에서 대중국 협상수단(leverage)으로 적절히 활용하여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함.

- 만약 관세화를 통해 우리나라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중국산 쌀이 대량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산 수입쌀에 대한 TSG제도 발동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앞서 언급한 것처럼 1주일 단위로 주요시장별 국내산 출하량과 시장가격 동향 그리고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 등을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중국산 수입쌀에 대해 TSG제도 발동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쌀시장 개방의 경우에도 TSG제도를 발동하게 되면 실제로 중국에 돌아갈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이는 것은 쌀협상에서 중국에 대해 협상수단(leverage)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쌀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다른 중국산 농산물수입에 대한 TSG제도를 발동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함. TSG제도의 발동은 해당품목 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관련자료 확보가 이루어져 향후 중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중국의 대응조치를 끌어낼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관련 자료의 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TSG제도를 남용하려 한다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될 뿐 아니라, TSG조치를 발동하더라도 실제로 중국산 수입에 대한 억제효과가 적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쌀협상에서의 'TSG제도 활용'이라는 협상카드를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임.

(5) 국내법규의 보완

- 현행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2조의 2에 해당하여 중국산에 대해 TSG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도 제17조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 점진적 완화, 재검토, 다시 TSG조치를 취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일반SG조치의 경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SG제도와는 달리 TSG제도는 조치시행 전 60일간 중국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리고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조치시행 이후 일정기간(물량의 상대적 증가는 2년, 절대적 증가는 3년)이 경과하면 중국이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TSG조치 기간이 2년/3년



을 초과하기 어려워 SG조치(4년까지 가능)보다 이행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음.

- GATT(1994) 제19조 및 WTO세이프가드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TSG조치를 SG조치와 달리 규정하도록 국내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60일간 중국과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점과 2년/3년 이후에는 중국이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TSG조치의 점진적 완화, 재검토, 다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해서는 SG조치와는 달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6. 결론 및 정책제언

- 중국이 WTO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201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된 TSG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중국산 농산물 수입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며 우리 농업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줄어들 것임.
- 1999년 마늘에 대한 우리나라의 SG제도 발동에 대해서 (당시 WTO 비회원국이었던) 중국이 보복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음. 그러나 지금은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그리고 TSG제도는 중국의 WTO회원국 가입의정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TSG제도 발동에 대한 중국의 대응조치도 과거와는 달리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TSG제도는 조치발동 전에 60일 이내로 중국과의 사전협의과정을 두고 있으며, 만약 사전협의과정에서 양국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 TSG조치를 발동하고 그 사실을 WTO SG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중국은 다른 회원국의 TSG조치에 대해 상대적 증가는 2년 그리고 절대적 증가는 3년이 경과해야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즉시 WTO SG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만약 TSG조치의 발동요건, 조사절차, 중국과의 사전협의 등을 WTO규정에 적합하게 진행된다면, TSG조치를 발동했을 경우 중국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음. 만약 중국이 부당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WTO 분

쟁해결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 SG제도와 비교하면 TSG제도는 그 발동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반면 60일간 중국과의 사전협의, 일정기간(2년/3년) 이후 중국의 대응조치 가능 등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 효과측면에서는 TSG조치가 SG조치보다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있음.
- TSG제도 발동요건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들로는 해당품목의 국내생산(예상)량 및 소비량, 통관물량, 주요시장에의 출하량과 가격, 주요생산자들의 영업여건 및 실적, 해당품목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등을 들 수 있음.
  - 기간별(예를 들면 1주일 단위)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국내생산량과 수입량 그리고 시장가격과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발동요건(시장교란 또는 무역전환)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TSG제도는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SG조치보다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중국과의 사전협의과정을 활용하여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전에 중국의 상응조치를 유도하여 세이프가드조치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조치를 시행한 후 있을 수 있는 중국의 보복조치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있음.
  - TSG제도 관련 사전준비가 철저할수록 중국과의 사전협의과정에서 중국의 상응조치를 이끌어내기 쉬울 것이며, 그 결과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없어짐.
- 현재 390여개 품목의 중국산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는데 수입현황 분석을 통해 TSG제도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품목들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임.
  - 현재까지 중국산 농산물 수입현황과 WTO/DDA 협상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품목 40여개를 선정.
  -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해야할 품목으로는 국내생

산량이 많지 않은 품목들을 제외한 양파(신선/냉장), 옥수수(기타), 된장, 대두(종자/가루), 대두유(추출물), 호박(건조), 오이류(일시저장처리), 당근(신선/냉장), 김(건조), 송이버섯(냉동), 과일(견과/기타), 강낭콩 등 12개 품목임.

- 비록 지금은 중국산 수입금액이 작지만 앞으로 WTO/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으로서 국내생산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중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품목으로는 참깨(참기름 포함), 대두(기타), 팥, 고추, 전분(고구마), 양파(건조/신선/냉장), 김(건조), 고사리(건조), 밤, 낙화생(조제/저장/처리), 들깨씨, 당면, 당근(신선/냉장), 마늘(조제/저장처리), 파(건조), 전분(기타), 인삼류, 대추, 녹두, 잣, 녹차, 생강, 마늘(건조), 메밀, 낙화생 등 25개 품목임.

- TSG제도는 조치 시행 전 중국과 60일간 사전협의를 거쳐야하고, 조치 시행 후 수입량의 상대적 증가는 2년 그리고 절대적 증가는 3년이 경과하면 중국이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SG조치보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작을 수 있음.

- 현행 국내법규에서는 SG조치나 TSG조치나 동일하게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한 후 점진적 완화, 재검토, 다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TSG조치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보완하여 달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 고 자 료

I.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63
II. GATT(1994) 제19조 .....	97
III. WTO 세이프가드 협약 .....	80
IV. WTO 농산물 협약 제5조 .....	88
V.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6조 .....	9
1. 영문	
2. 국문	
VI. Framework Agreement (2004. 8.1) .....	96
VII. 중국산 농산물 품목별 수입현황 .....	118

## 1.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07093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도모하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을 말한다.
2. "물품등"이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등을 말한다.
3. "덤핑"이라 함은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을 말한다.
4. "보조금등"이라 함은 관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말한다.

**제3조 (공정성·투명성 등의 확보)**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그 소속공무원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조사·판정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장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등

**제4조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나.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
  - 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
  - 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표시대상품
3. 그 밖에 수출입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5조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결정)** ①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신청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직권조사)**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잠정조치)** ①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였거나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여 잠정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잠정조치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행위자에게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담보제공)** ①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평가·제공방법과 담보의 변경·보충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각각 "무역위원회"로 본다.

③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판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담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사항 외에 담보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판정 및 통지 등)** ①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하여 판정하여야 하며, 조사개시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의 범위에서 판정의 시한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②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정조치)**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당해 물품등의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정정광고,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1.20>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 (과징금)**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거래금액이 없거나 거래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 삭제 <2004.1.20>

③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무역 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로 인하여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무역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무역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이의신청)** ①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어 조사에 추가시일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장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제15조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①특정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특정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제16조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①무역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신청일부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부터 4월 이내에



당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의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세이프가드조치 등의 건의<개정 2004.1.20>)** ①무역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1. 관세율의 조정
2. 수입물품 수량의 제한
3. 삭제 <2004.1.20>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의 건의와 함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하 "구조조정촉진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③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4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④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세이프가드조치가 관련 산업, 국내물가, 소비자의 이익, 통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⑤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제18조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무역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중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잠정적으로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세이프가드조치 등의 시행 및 해제<개정 2004.1.20>)**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세이프가드조치·잠정세이프가드조치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시행여부·조치내용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이프가드조치·잠정세이프가드조치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협의, 법령의 개정 등의 준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이프가드조치 또는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제통상 관계와 국민경제 및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주기로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1. 당해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된 후 1년이 경과될 것
2. 세이프가드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당해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가 2회 이내일 것

**제20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재검토 등)** ①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에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완화 또는 해제여부를 다시 검토(이하 "중간재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무역위원회는 중간재검토 결과 세이프가드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무역위원회는 중간재검토 결과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촉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조치의 시행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20조의2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등 검토)** ①무역위원회는 시행중인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조치연장 등의 건의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국내산업이 구조조정중에 있다는 증거가 있고,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당해 세이프가드조치의 종료일부터 1월 이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기간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③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와 함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은 때에는 현재 시행중인 조치가 종료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시행여부·조치내용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되는 조치내용 및 연장되는 적용기간내의 조치내용은 최초의 조치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0]

**제21조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①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이 적용되는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통하여 당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섬유수입수량제한의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이 조에서 "섬유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③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잠정적으로 섬유수입수량제한의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이 조에서 "잠정 섬유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섬유세이프가드조치 또는 잠정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조치내용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섬유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제22조 (서비스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①외국인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증가로 인하여 동종의 서비스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통하여 당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조치내용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제22조의2 (세계무역기구의 특정 회원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①2001년 이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회원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세이프가드조치(이하 "특별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또는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당해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하여 자국의 시장교란을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당해 물품이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의 대상이 되는 품목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시장을 교란하여 동 품목의 교역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한 후 조사를

통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등의 시행을, 제1항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20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④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시행중인 특별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국내산업의 시장교란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및 구조조정촉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특별세이프가드조치,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 특별세이프가드조치연장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조치내용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국가,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22조의3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우리나라가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등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국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이 협정에서 정한 피해 등을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산업피해등"이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한 후 조사를 통하여 당해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에 산업피해등이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③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산업피해등이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④무역위원회는 시행중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산업피해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시행을 건의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조치내용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국가,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 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 제4장 덤핑 및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제23조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개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은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개시 결정, 보조금등의 지급사실의 조사,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상계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은 관세법 제57조 내지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장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개정 2004.1.20>

**제25조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개정 2004.1.20>)** 무역위원회는 외국으로부터의 물품의 수입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무역협정의 체결 또는 국제무역제도의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제25조의2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①무역위원회는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는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25조의3 (구제조치의 건의)** 무역위원회는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제26조 (조사자료의 요구)** 무역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장 무역위원회

**제27조 (무역위원회의 설치)** ①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판정, 수입증가·덤핑·보조금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조사·판정,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무역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국제무역제도의 연구 등 무역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제28조 (무역위원회의 소관업무)** 무역위원회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1.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
2.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3.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판정
4.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 섬유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섬유세이프가드조치,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중간재검토 또는 연장검토
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경쟁력 영향 등의 조사

- 5의2.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 6.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개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
- 7. 관세법 제5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개시 결정, 보조금등의 지급사실의 조사,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상계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
- 8.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사례 등의 조사·연구
-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10. 기타 공정무역의 촉진 등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 및 건의

**제29조 (무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4.1.20>

- 1. 무역진흥·기업경영·회계·관세 또는 지적재산권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 4. 산업정책·무역진흥 또는 관세행정분야의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무역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신체정신상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중 임명된 일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32조 (회의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무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의결의 공개)** ①무역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무역위원회 의결을 위한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개정 2004.1.20>)**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②무역위원회에서 조사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신설 2004.1.20>

③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제35조 (조직 및 운영규정)**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무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장 보칙

**제36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무역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자문 및 조사의뢰

②무역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③무역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사무소·영업소·공장·사업장·점포·창고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

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및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3.1.20>

**제37조 (조사단의 구성)** ①무역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무역위원회의 소속공무원
2.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3. 당해 산업과 관련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사업자단체 등의 임원 및 직원

4. 그 밖에 산업·무역 및 국제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사업자단체 등의 장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 (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공무원 또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조사·판정 등의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무역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37조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8장 벌칙

**제40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②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위촉을 받은 감정인으로서 허위의 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0>

1.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1의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당사자

2.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을 방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제6417호,200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역위원회 위원의 자격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자원부장관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부과하거나 명한 처분 또는 명령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으로 본다.

**제4조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외무역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구제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외무역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구제조치는 이를 세이프가드조치로 본다.

**제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및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제26조 및 제27조) 및 제2절(제28조 내지 제30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중 "輸入制限措置"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輸入制限措置"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輸入制限措置"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4장제4절(제32조 내지 제38조)을 삭제한다.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第1項 各號"를 "제1항제2호"로,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貿易委員會로부터"를 "貿易委員會로부터"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貿易委員會는"을 "産業資源部長官은"으로 한다.

제59조중 "貿易委員會의 委員長·委員, 産業資源部長官"을 "産業資源部長官"으로 한다.

## 부 칙 <제7093호, 2004. 1. 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불공정무역행위조사의 판정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를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II. GATT(1994) 제 19 조

### 제 19 조 特定產品의 輸入에 대한 緊急措置

1. (a) 체약국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진전과 본 협정에 의하여 체약국이 부담하는 의무(관세양허를 포함)를 이행한 결과, 어느 상품이 동종상품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의 국내생산업자에 심각한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만큼 증가된 수량과 상황하에 자국내에 수입되고 있을 때에는, 동 체약국은 동 상품에 대한 전기 손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동안 당해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  
(b) 특혜양허의 대상인 상품이 체약국의 영역내에서 본항(a)에 규정한 상황하에 수입된 결과, 동 특혜를 받고 있거나 받아온 다른 체약국의 동종상품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의 국내생산사에 대하여 심각한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체약국은 전기 타체약국의 요청이 있을 때 당해 상품에 대하여 동 손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는 데 필요한 한도 및 기간동안 당해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체약국은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급적 조속히 서면으로 체약국단에 통고하여야하며, 또한 동 조치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기회를 체약국단 및 해당상품 수출국으로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체약국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특혜양허에 관하여 전기 통고를 할 때에는 동 통고에 조치를 요청한 체약국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지연되면 회복이 곤란한 손해를 야기할 만큼 급박한 사태 하에서는 본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사전협의 없이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단, 이는 동 조치를 취한 후 즉시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a) 전기 조치에 관하여 관련체약국간에 합의에 도달되지 않았을 때에도 동 조치를 위하거나 또는 계속할 것을 제안한 체약국은 임의로 동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만약 동 조치가 취하여지거나 계속될 경우 영향을 받는 체약국은, 동 조치가 취하여진 후 90일 이내에 그리고 체약국단이 정지통고서를 수령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 체약국단이 부인하지 않는 한, 동 조치를 위하고 있는 체약국의 무역 혹은 본조 제1항(b)에 따라 동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체약국의 무역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본 협정상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적용을 임의로 정지할 수 있다.  
(b) 본항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없이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조치가 취해지고 또한 종 조치에 의하여 타체약국내의 관련상품 국내생산업체가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와 지연되면 회복하기 곤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동 체약국은 동 조치 발동시 및 그 후의 협의기간 동안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는 데에 필요한 양허 또는 기타의 의무를 임의로 정지할 수 있다.

### III. WTO 세이프 가드 협약

「WTO 緊急輸入制限措置에 관한 協約」

회원국들은,

1994년도 GATT에 기초한 국제무역체제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회원국의 전반적인 목적을 유념하고, 1994년도 GATT의 규율, 특히 제19조(특정상품 수입에 관한 긴급조치)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강화할 필요성과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다자간 통제를 재확립하고 이러한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조치를 폐지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구조조정 의 중요성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보다는 제고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또한 나아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가능하며 1994년도 GATT의 기본원칙에 근거하는 포괄적인 협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 1 조 一般規定

이 협정은 1994년도 GATT 제19조에 규정된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에 관한 규칙을 수립한다.

#### 제 2 조 條件

1. 회원국<sup>1)</sup>은 아래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특정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간된 물량과 조건하에 자기나라의 영토내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만, 그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출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 제 3 조 調査

1.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주무당국이 이전에 확립되고 1994년도 GATT 제 10조에 따라 공표된 절차에 따라 조사를 행한 후에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는 모든 이해

---

1) 관세동맹은 단일체로서 또는 회원국을 대신하여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동맹이 단일체로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른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의 판정을 위한 모든 요건이 관세동맹전체에 존재하는 제반조건에 근거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가 회원국을 대신하여 적용되는 경우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의 판정을 위한 모든 요건을 동 회원국내에 존재하는 제반조건에 근거하며, 동 조치는 동 회원국에 한정된다. 이 협정의 어느 조항도 1994년도 GATT 제19조와 제24조 제8항과의 관계에 관한 해석을 예단하지 아니한다.

당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공고를 포함하며, 수입자, 수출자, 그 밖의 이해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주장에 대응하고 특히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기회를 포함하여, 증거 및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청회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을 포함한다. 주무당국은 자신의 조사결과와 사실 및 법에 대한 모근 관련 쟁점에 대하여 도달하여 추론된 결론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공표한다.

2. 성격상 비밀이거나 비밀로서 제공된 정보는 이유가 제시되는 경우 주무당국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허가없이 공개되지 아니한다.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에게 그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이러한 당사자가 동 정보는 요약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동 당사자에게 요약문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무당국이 비밀취급 요구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관련 당사자가 정보를 공표할 용의가 없거나 또는 일반화되거나 요약된 형태로도 정보의 공개를 허가할 용의가 없는 경우, 그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이 적절한 출처를 통해 당국이 납득할 수 있도록 증명될 수 없는 한 동 당국은 이러한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

#### 제 4 조 심각한 피해 또는 憂慮의 判定

#####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심각한 피해”는 국내산업의 상태에 있어 증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나. “심각한 피해우려”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사실에 근거하며, 단순한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근거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판정함에 있어서 ‘국내산업 “은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활동하는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자신의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상품의 총 산출량이 동 상품의 국내총생산의 상당한 비율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가. 증가된 수입품이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서, 주무당국은 동 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가능한 성격의 모든 관련요소를 평가하며, 특히 관련상품의 절대적 및 상대적인 수입증가율 및 증가량,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및 손실, 그리고 고용의 수준에서의 변화를 평가한다.

나. 조사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관련 상품의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간의 인관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경우 이외에는 가호에 언급된 판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다. 증가된 수입품 이외의 요소가 국내산업에 동시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가 증가된 수입품의 탓으로 돌려지지 아니한다.

다. 주무당국은 조사중인 사안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조사된 요소의 적절성에 대한 증명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히 공표한다.

## 제 5 조 緊急輸入制限措置의 適用

1. 회원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다. 수량제한이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다른 수준이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는데 필요하다는 명백한 정당성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통계가 입수가능한 과거 대표적인 3년간의 평균수입량인 최근 기간의 수준 이하로 수입량을 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원국은 이러한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가. 쿼터가 공급국가들간에 할당되는 경우,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는 회원국은 관련상품의 공급에 실질적인 이해를 가진 모든 다른 회원국과 쿼타울의 할당에 관하여 합의를 모색할 수 있다. 이 방법이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경우 관련 회원국은 동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해를 가진 회원국에게 동 회원국이 과거 대표적인 기간중에 공급한 물량이 그 상품의 총수입수량 또는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한 몫을 할당하며, 이 경우 그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한다.

나. 회원국은 제12조 3항에 따른 협의가 제13조1항에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의 주관 하에서 수행되고 (1)특정회원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대표적인 기간중 관련상품의 수입의 총증가와 관련하여 불균형한 비율로 증가하였고, (2) 가호의 규정으로 부터의 일탈사유가 정당화되고, 또한 (3)그러한 일탈의 조건이 관련상품의 모든 공급자에게 공평하다는 데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위원회에 제시되는 경우에는 가호 규정으로부터 일탈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의 존속기간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최초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되지 아니한다. 위에 언급한 일탈은 심각한 피해의 우려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 6 조 暫定 緊急輸入制限措置

지연시 회복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중대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증가된 수입품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에 따라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동 기간중 제2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12조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제4조 제2항에 언급된 후속 조사가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환급이 가능하도록 관세인상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7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최초기간 및 연장



의 일부로 계산한다.

#### 제 7 조 緊急輸入制限措置의 存續其間 및 檢討

1. 회원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적용한다. 동 기간은 제2항에 따라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수입해당국의 주무당국이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절차와 합치하여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계속 필요하며, 산업이 조정중에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정하고 제8조 및 제12조의 관련 규정이 준수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언급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3.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총적용기간은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최초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제12조 1항 규정에 따라 통보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 존속기간은 1년을 넘는 경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회원국은 적용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조치의 존속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국가는 조치의 중간시점 이전에 상황을 검토하며, 적절한 경우 동 조치를 철회하거나 자유화를 가속화한다.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조치는 최초기간의 종료시점보다 더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자유화되어야 한다.
5. 세계무역기구協定の 발효일 이후에 취해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이러한 조치가 이전에 적용되었던 기간만큼의 기간 동안(다만, 이 경우 비적용기간이 최소한 2년이 된다)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재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이 180일 이내인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하여 재적용할 수 있다.
  - 가.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도입된 날로부터 최소한 1년이 경과하였으며, 또한
  - 나. 이러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도입된 날 이전 과거5년의 기간내에 동일상품에 대하여 2번을 초과하여 동 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 제 8 조 讓許 및 다른 義務의 水準

1.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동 조치를 연장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과 자기 나라간에 1994년도 GATT협정에 따라 존재하는 양허와 다른 의무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회원국은 그들의 무역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제12조 3항에 따른 협의에서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은 조치가 적용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무역이 사회가 그러한 양허정지의 서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상품무역이사회가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회원국의 무역에 대하여 1994년도 GATT협정의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나 다른 의무의 적용을 자유로이 정지한다.
3.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취해지고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언급된 정지의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처음 3년동안에는 행사되지 아니한다.

### 제 9 조 開發途上會員國

1. 개발도상회원국이 원산지인 상품이 수입회원국의 동 상품 수입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3%를 초과하지 않으며, 3%미만인 수입점유율을 가진 개발도상회원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의 합이 관련상품의 총수입의 9%를 넘지 아니할 경우에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개발도상 회원국이 원산지인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sup>2)</sup>
2. 개발도상회원국은 제7조 3항에 규정된 최대기간을 초과하여 최장 2년까지의 기간동안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후 취하여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상품의 수입에 대해 그러한 조치가 이전에 적용되었던 기간의 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동 조치를 적용할 권리를 가진다. 단, 이 경우 비적용기간이 최소한 2년이 된다.

### 제 10 조 既存의 제19조 措置

회원국은 1947년도 GATT 제19조에 따라 취한 조치로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에 존재하는 모든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동 조치가 최초로 적용된 날로부터 8년 이내, 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 중 보다 늦게 도래하는 시한 이내에 종료시킨다.

### 제 11 조 特定措置의 禁止 및 撤廢

1. 가. 회원국은 1994년도 GATT 제9조에 명시된 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가 이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동조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거나 모색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회원국은 어떠한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유지협정 또는 수출 또는 수입측면에서의 그 밖의 유사한 조치도 모색하거나, 취하거나 또는 유지하지 아니한다.<sup>3)4)</sup> 이러한 조치

2) 회원국은 제19조 제1항에 대하여 취해진 조치를 즉시 긴급수입제한조치 위원회에 통보한다.

는 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간의 협정, 약정 및 양해에 따른 조치뿐만 아니라 단일회원국에 의한 조치를 포함한다.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이러한 모든 조치는 이 협정에 합치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다. 제19조 이외의 1994년도 GATT 규정 및 이 협정 이외의 부속서 1 간의 다자간 협정 또한 1994년도 GATT 체제 내에서 체결된 의정서 및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회원국이 모색하거나 취하거나 또는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이 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1항 나호에 언급된 조치의 단계적 폐지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련 회원국에 의해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제시되는 일정표에 따라 수행한다. 이러한 일정표는 수입회원국별<sup>5)</sup> 존속기간이 1999년 12월 31일 이후까지 연장되지 아니하는 단 하나의 특정조치 이외에는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조치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이후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단계적으로 폐지되거나 이 협정과 일치 되도록 규정한다. 동 예외는 직접 관련되는 회원국들 상호간에 합의되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긴급수입제한 조치위원회의 검토와 수락을 위하여 동 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조치를 명시한다.
3. 회원국은 제1항에 언급된 조치와동등한 비정부적 조치가 공·사기업에 의해 채택 또는 유지되는 것을 장려하거나 지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2 조 通報 및 協議

1. 회원국은 즉시 다음사항에 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 위원회에 통보한다.  
가.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와 관련한 조사과정의 개시 및 그 사유  
나. 증가된 수입품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에 관한 판정, 그리고  
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또는 연장에 관한 결정
2. 제1항 나호 및 다호에 언급된 행항에 있어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회원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모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동 정보에는 증가된 수입품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에 관한 증거, 관련상품과 제안된 조치의 정확한 기술, 제안된 도입일자, 예상존속기간 및 점진적인 자유화를 위한 일정이 포함된다. 조치의 연장의 경우에는 관련 산업이 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가 포함된다. 상품무역이사회 또는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는 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국가로부터 그들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3) 1994년도 GATT 및 이 협정의 관련규정과 합치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로서 적용되는 수입쿼터는 상호합의에 따라 수출회원국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

4) 유사한 조치의 예에는 수출조절, 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 감시체제, 수출또는 수입감시, 강제적인 수입카르텔 및 임의적인 수출 또는 수입허가제도로써 보호를 제공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5) 歌州共同體에 부여된 이러한 유일한 예외는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다.

3.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회원국은 관련상품의 수출국으로서 실질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회원국에 대하여 특히,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고 동 조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양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4. 회원국은 제6조에 언급된 잠정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통보한다. 협의는 조치가 취해진 후 즉시 개시한다.
5. 本條에 언급된 협의 결과 및 제7조 제4항에 언급된 중간검토 결과, 제8조 제1항에 언급된 양허 및 다른 의무의 제안된 정지된 관련 회원국에 의하여 즉시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된다.
6. 회원국은 신속히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련된 自國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와 이에 대한 모든 수정을 통보하였다.
7. 세계무역기구協定の 발효일에 존재하는 제10조 및 제11조 제1항에 規定된 조치를 유지하는 회원국은 이러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協定の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통보한다.
8. 회원국은 이 협정에 의하여 통보되어야 하나 당해 회원국이 통보하지 아니한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법률, 규정, 행정절차 및 조치 또는 행위를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9. 모든 회원국은 제11조 제3항에 언급된 모든 비정부적 조치를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10. 이 협정에 언급된 상품무역이사회에 대한 모든 통보는 통상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11. 이 협정의 통보에 관한 규정은 회원국에게 공개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비밀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 제 13 조 監視

1. 상품무역이사회는 권한하에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가 이 협정에 의해 설치되며 이 위원회는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회원국의 참가에 개방된다. 이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 가. 이 협정의 일반적인 이행을 감독하고 상품무역이사회에 매년 보고하며 협정의 개선을 위하여 권고한다.
  - 나. 영향을 받은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절차적인 요건이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그 조사결과를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한다.
  - 다. 회원국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들간의 협의를 지원한다.
  - 라. 제10조 및 제11조 제1항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검토하고 이러한 조치의 단계적 폐지를 감

시하고 상품무역이사회에 적절히 보고한다.

마.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중지를 위한 제안이 “실질적으로 동등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적절히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한다.

바.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통보를 접수하고 검토하며, 상품무역이사회에 적절히 보고한다.

사. 상품무역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협정과 관련된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위원회의 감독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은 통보 및 다른 이용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운영에 관한 사실보고서를 매년 작성한다.

#### 제 14 조 紛爭解決

분쟁해결양해에 의해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協定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이 협정하에서 발생하는 협의와 분쟁해결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속서

<표 3-1> 제11조 제2항에 언급된 예외

관련회원국	품 목	종 료
歌州共同體/ 日本	승용차, 비포장도로차량, 경상용차, 경트럭(5톤까지) 및 이들의 완전 분해 된 형태(CKD세트)	1999년 12월 31일

## IV. WTO 농산물 협약 제5조

### 1. 農(林畜)産物 特別緊急關稅制度의 內容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입장벽을 관세화시킬 때에는 농산물의 국제시장가격이 그대로 수입국의 국내시장에 반영되어 수입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수입의 급증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관세화에 따르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WTO협정에서는 GATT(1994)협정 제19조와 WTO세이프가드협정과는 별도로 관세대상 농산물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Special Safeguard)제도<sup>6)</sup>를 마련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WTO 농산물협약(WTO Agreement on Agriculture)이 제도적 장치로서 설치하고 있는 특별세이프가드규정에 관해서 고찰해 본다. 동 협약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 5 조 (특별긴급수입제한규정)

1. 1994년도 GATT 제2조 제1항(b)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이 협정 제4조 제2항에 언급된 조치가 일반관세로 전환한 농산물로서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SSG"라는 기호로 본 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양허의 대상으로 명시한 농산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아래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다음의 경우에 원용할 수 있다.

- (a) 양허를 한 회원국의 관세영역으로 들어오는 동 품목의 수입물량이 특정연도에 제4항에 명시된 기존의 시장접근기회와 관련되는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그러나 비동시적으로
- (b) 양허를 한 회원국의 관세영역으로 들어오는 동 품목의 수입가격이 운임·보험료 포함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자기나라 통화로 환산시 동 품목의 1986~1988년 평균참조가격<sup>7)</sup>인 발동가격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양허의 일부로서 설정된 현행 및 최소시장 접근 약속하의 수입은 제1항 (a)호와 제4항의 규정 원용을 위해 필요한 수입물량 산정에는 포함되나, 이러한 약속에 따른

---

6) 이러한 조치는 1947년도 GATT의 규정으로부터의 국별의무 일탈에 따라 유지되는지 여부를 관계없이 수입수량제한, 가변수입부과금, 최소수입가격, 임의적 수입허가, 국영무역을 통하여 유지되는 비관세조치, 수출자율규제, 일반관세이외의 유사한 국경조치를 포함한다. 단 1994년도 GATT나 세계무역기구 부속서 1가의 국제수지규정 또는 다른 일반적, 비농특정적 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조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7) 본조의 규정의 원용을 위해 사용되는 참조가격은 일반적으로 관련품목의 단위당 평균운임·보험료 포함 수입가격 또는 해당품목의 품질 및 가공단계 등을 적절히 감안한 가격을 말한다. 참조가격은 처음 사용된 후 공개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다른 회원국이 부과될 추가적인 관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수입은 제1항(a)호 및 제4항 또는 제1항(b)호 및 제5항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적인 관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제1항(a)호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기초로 운송중에 있는 당해 품목의 공급물량은 추가적인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단, 동 물량은 다음 해에 제1항(a)호의 규정을 발동할 목적으로 동 품목의 다음해의 수입량에 산입할 수 있다.

4. 제1항(a)호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적인 관세는 동 추가관세가 부과된 당해연도의 말일까지만 유지되며, 또한 조치가 취해지는 해에 유효한 일반 관세의 1/3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부과되지 아니한다. 발동수준은 시장접근기회에 기초한 아래표에 따라 설정하되 동 시장접근기회는 자료입수가 가능한 이전 3년동안의 당해 품목의 국내소비<sup>8)</sup>에 대한 수입비율로서 정의된다.

(a) 당해품목의 시장접근기회가 10%이하인 경우에는 기준발동 수준은 125%가 된다.

(b) 당해품목의 시장접근기회가 10%보다 크고 3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발동 수준은 110%가 된다.

(c) 당해품목의 시장접근기회가 30%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발동 수준은 105%가 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특정연도 추가적인 관세는 당해연도에 양허를 행한 회원국의 관세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당해품목의 절대 수입량이 상기에 설정된 기준발동 수준에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을 곱한 것(x)과 자료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의 당해품목의 국내소비량의 전년도 대비 절대변화량(y)을 더한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단 발동수준은 상기(x)에 있어서 평균수입량의 105% 미만이지 아니한다.

5. 제1항(b)호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적인 관세는 다음의 표에 따라 설정된다.

(a) 국내통화로 환산한 운임·보험료 포함 수입가격(이하 “수입가격”이라한다.)과 제1항(b)호에 따라 규정된 발동가격과의 차이가 발동가격의 10%이하 인 경우 추가적인 관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b) 수입가격과 발동가격과의 차이(이하 “가격차”라 한다)가 발동가격의 10%보다 크고 40%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관세는 가격차가 10%를 초과하는 부분의 30%가 된다.

(c) 가격차가 발동가격의 40%보다 크고 60%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관세는 가격차가 40%를 초과하는 부분의 50%에 (b)호에 따라 허용된 추가적인 관세를 더한 수치가 된다.

(d) 가격차가 60%보다 크고 75%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관세는 가격차가 발동가격의 60%를 초과하는 부분의 70%에 (b)호와 (c)호에 따라 허용된 추가적인 관세를 더한 수치가 된다.

(e) 가격차가 발동가격의 75%보다 큰 경우, 가격차가 75%를 초과하는 부분의 90%에 (b)호, (c)

---

8) 국내소비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a)호에 따라 기준발동 수준이 적용된다.

호 및 (d)호에 따라 허용되는 추가적인 관세를 더한 수치가 된다.

6. 부패성 및 계절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 위의 조건들은 이러한 품목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된다. 특히 제1항(a)호와 제4항에서의 보다 짧은 기간은 기준기간중의 상응한 기간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상이한 기간에 대한 상이한 참조가격은 제1항(b)호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7. 특별긴급제한措置의 운영은 투명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위의 제1항(a)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그리고 늦어도 이러한 조치 이행 후 10일 이내에 농업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소비량의 변화량이 제4항에 의한 조치대상이 되는 개별관세품목 분류번호에 할당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변화량을 할당하는 데 사용된 정보나 방법이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 제4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은 동 조치의 발동조건에 관하여 모든 이해당사회원국에게 협의기회를 부여한다. 위의 제1항(b)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은 첫 번째 조치 이행 후 10일 이내에 농업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며 부패성 및 계절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는 어느 기간에도 첫 번째 조치 이행 후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회원국은 당해품목의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 가능한 한 위의 제1항(b)호 규정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은 모든 이해당사회원국에 대하여 동 조치의 적용조건에 관하여 협의의 기회를 부여한다.
8. 위의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합치하여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회원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제1항(a)와 제3항 또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9. 본조의 규정은 제20조에 따라 결정되는 개혁과정의 존속기간 동안 효력을 갖는다.



## V.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6조

### 1. 가입의정서 제16조 (영문)

#### 16. Transitional Product-Specific Safeguard Mechanism

1. In cases where products of Chinese origin are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ny WTO Member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or under such conditions as to cause or threaten to cause market disruption to the domestic producers of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the WTO Member so affected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China with a view to seeking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including whether the affected WTO Member should pursue application of a measure under the Agreement on Safeguards. Any such request shall be notified immediately to the Committee on Safeguards.

2. If, in the course of these bilateral consultations, it is agreed that imports of Chinese origin are such a cause and that action is necessary, China shall take such action as to prevent or remedy the market disruption. Any such action shall be notified immediately to the Committee on Safeguards.

3. If consultations do not lead to an agreement between China and the WTO Member concerned within 60 days of the receipt of a request for consultations, the WTO Member affected shall be free, in respect of such products, to withdraw concessions or otherwise to limit imports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uch market disruption. Any such action shall be notified immediately to the Committee on Safeguards.

4. Market disruption shall exist whenever imports of an articl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with an article produced by the domestic industry, are increasing rapidly, either absolutely or relatively, so as to be a significant cause of material injury, or threat of material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In determining if market disruption exists, the affected WTO Member shall consider objective factors, including the volume of imports, the effect of imports on prices for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articles, and the effect of such imports on the domestic industry producing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5. Prior to application of a measure pursuant to paragraph 3, the WTO Member taking such action shall provide reasonable public notice to all interested parties and provide adequate opportunity for importers, export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o submit their views and evidence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posed measure and whether it would be in the public interest. The WTO Member shall provide written notice of the decision to apply a measure, including the reasons for such measure and its scope and duration.

6. A WTO Member shall apply a measure pursuant to this Section only for such period of time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the market disruption. If a measure is taken as a result of a relative increase in the level of imports, China has the right to suspend the application of substantially equivalent concessions or obligations under the GATT 1994 to the trade of the WTO Member applying the measure, if such measure remains in effect more than two years. However, if a measure is taken as a result of an absolute increase in imports, China has a right to suspend the application of substantially equivalent concessions or obligations under the GATT 1994 to the trade of the WTO Member applying the measure, if such measure remains in effect more than three years. Any such action by China shall be notified immediately to the Committee on Safeguards.

7. In critical circumstances, where delay would cause damage which it would be difficult to repair, the WTO Member so affected may take a provisional safeguard measure pursuant to a preliminary determination that imports have caused or threatened to cause market disruption. In this case, notification of the measures taken to the Committee on Safeguards and a request for bilateral consultations shall be effected immediately thereafter. The duration of the provisional measure shall not exceed 200 days during which the pertinent requirements of paragraphs 1, 2 and 5 shall be met. The duration of any provisional measure shall be counted toward the period provided for under paragraph

8. If a WTO Member considers that an action taken under paragraphs 2, 3 or 7 causes or threatens to cause significant diversions of trade into its market, it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China and/or the WTO Member concerned. Such consultations shall be held within 30 days after the request is notified to the Committee on Safeguards. If such consultations fail to lead to an agreement between China and the WTO Member or Members concerned within 60 days after the notification, the requesting WTO Member shall be free,

in respect of such product, to withdraw concessions accorded to or otherwise limit imports from China, to the extent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uch diversions. Such action shall be notified immediately to the Committee on Safeguards.

9. Application of this Section shall be terminated 12 years after the date of accession.

## 2. 가입의정서 제16조 (국문)

### 16. 한시적 상품분야(product-specific) 세이프가드 메카니즘(safeguard mechanism)

1. 중국원산지 상품이 WTO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급격한 물량증가로 인하여 WTO 회원국의 국내생산업자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 상품에 대한 시장교란(market disruption)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 피해를 입은 WTO 회원국은 세이프가드 협정문에 기초하여 조치(measure)를 실행할 것인지를 포함한 상호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모색에 중점을 두고 중국과 협의(consultation)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은 즉각적으로 세이프가드 위원회에 통지되어야만 한다.

2. 만약 양자협의 과정에서 중국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원인이며 구체적인 행동(action)이 필요하다고 상호동의하게 되면 중국은 시장교란을 금지하거나 보상(remedy)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수행해야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은 즉각적으로 세이프가드 위원회에 통지되어야만 한다.

3. 만약 협의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중국과 해당 WTO 회원국 간에 협의가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WTO 회원국은 그 품목에 관해 양허(concession) 철회에 대해 자유로워질 것이며 시장교란을 금지하고 보상에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한 실행(action)은 즉각적으로 세이프가드위원회에 통지되어야 한다.

4. 시장교란은 국내 산업에 의해 생산되어진 상품과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유사한 상품의 수입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물질적 피해의 현저한 원인으로서는 또는 국내산업에 물리적 피해의 위협으로서, 급속하게 증가할 경우마다 나타난다(exist). 시장교란이 존재한다는 것을 결정(determining)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WTO 회원국은 수입량을 포함하여 직접적으로 경쟁적 또는 유사한 상품 가격에 관한 수입의 영향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쟁적 또는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관한 수입의 영향을 포함한 객관적인 원인(factors)을 고려한다.

5. 제3항에 의거한 조치(measure)의 적용에 앞서 그러한 조치를 실행하는 WTO 회원국은 모든 관련당사자들에게 합리적으로 공식적인 통보(public notice)를 제공하고 수입업자, 수출업자 그리고 기타 관련당사자들로 하여금 제안된(proposed) 조치의 적합성(appropriateness)에 관한 그들의 견해(views)와 증거(evidence)를 제시할 수 있고 그러한 조치가 공공이익에 관한 것인가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WTO 회원국은 조치(measure)에 관한 이유, 범위(scope) 그리고 기간(duration)를 포함하여 조치적용의 결정에 관한 서면통지(written notice)를 제공한다.

6. WTO 회원국은 이 조항에 의거하여 조치를 시장교란을 금지하거나 구제(remedy)에 필요한 그 기간동안만 적용한다. 만약 조치(measures)가 수입에서 상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수행된 것이며 그 조치가 2년을 초과하여 효력이 잔존한다면 중국은 조치를 적용한 WTO 회원국에게 GATT1994 원칙하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concession) 또는 의무(obligation)를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그 조치가 수입에 있어 절대적 증가(absolute increase)의 결과로서 수행된 것이며 그 조치가 3년을 초과하여 효력을 잔존하고 있다면 중국은 조치를 적용한 WTO 회원국에게 GATT1994 원칙하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concession) 또는 의무(obligation)를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 의한 그러한 행동(action)은 즉각적으로 세이프가드 위원회에 통보한다.

7. 연기(delay)로 인해 보상(repair)을 어렵게 하는 손실(damage)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환경에서 피해를 입은 WTO 회원국은 수입이 시장교란을 위협하거나 유발하였다라는 예비결정(preliminary determination)에 따라 잠정적(provisional) 세이프가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치 통보는 세이프가드위원회에 통지되어야하며 그 후 즉각적으로 양자협의 요청이 이루어진다. 잠정적 조치의 기간은 제1항 제2항 그리고 제5항의 관련요구(the pertinent requirement)가 충족(be met)되는 동안 20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어떤 잠정적 조치의 기간은 제6항에서 제안된 기간부터 계상(counted)되어진다.

8. 만약 WTO 회원국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7항을 기준으로 조치된 실행이 시장에서 현저한 무역 전환의 발생 또는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중국 그리고 또는 관련된 WTO회원국과 협의를 요청할 것이다. 그와 같은 협의는 요청이 세이프가드위원회에 통지된 이후 30일 이내에 시작된다. 만약 통지된 후 60일 이내에 중국과 WTO 회원국간 또는 관련된 회원국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 상품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한 WTO회원국은 무역전환(diversions)을 보상 또는 방지(prevent)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허용된 양허의 축소나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러한 행동은 즉각적으로 세이프가드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9. 본 조(this section)는 가입 날로부터 12년 후 종료된다.

## **VI. Framework Agreement (2004.8.1)**

**1. The General Council reaffirms the Ministerial Declarations and Decisions adopted at Doha and the full commitment of all Members to give effect to them. The Council emphasizes Members' resolve to complete the Doha Work Programme fully and to conclude successfully the negotiations launched at Doha. Taking into account the Ministerial Statement adopted at Cancun on 14 September 2003, and the statements by the Council Chairman and the Director-General at the Council meeting of 15-16 December 2003, the Council takes note of the report by the Chairman of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TNC) and agrees to take action as follows:**

**(a) Agriculture: the General Council adopts the framework set out in Annex A to this document.**

**(b) Cotton: the General Council reaffirms the importance of the Sectoral Initiative on Cotton and takes note of the parameters set out in Annex A within which the trade-related aspects of this issue will be pursued in the agriculture negotiations. The General Council also attaches importance to the development aspects of the Cotton Initiative and wishes to stress the complementarity between the trade and development aspects. The Council takes note of the recent Workshop on Cotton in Cotonou on 23-24 March 2004 organized by the WTO Secretariat, and other bilateral and multilateral efforts to make progress on the development assistance aspects and instructs the Secretariat to continue to work with the development community and to provide the Council with periodic reports on relevant developments.**

**Members should work on related issues of development multilaterally with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continue their bilateral programmes, and all developed countries are urged to participate. In this regard, the General Council instructs the Director General to consult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Bretton Woods Institutions,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 to direct effectively existing programmes and any additional resources towards development of the economies where cotton has vital importance.**

**(c)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the General Council adopts the framework set out in Annex B to this document.**

**(d) Development:**

**Principles:** development concerns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The General Council rededicates and recommits Members to fulfilling the development dimension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which places the needs and interest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at the heart of the Doha Work Programme. The Council reiterates the important role that enhanced market access, balanced rules, and well targeted, sustainably financ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programmes can play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se countries.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the General Council reaffirms that provisions for special and differential (S&D) treatment are an integral part of the WTO Agreements. The Council recalls Ministers' decision in Doha to review all S&D treatment provisions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them and making them more precise, effective and operational. The Council recognizes the progress that has been made so far. The Council instructs the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in Special Session to expeditiously complete the review of all the outstanding Agreement-specific proposals and report to the General Council, with clear recommendations for a decision, by July 2005. The Council further instructs the Committee, within the parameters of the Doha mandate, to address all other outstanding work, including on the cross-cutting issues, the monitoring mechanism and the incorporation of S&D treatment into the architecture of WTO rules, as referred to in TN/CTD/7 and report, as appropriate, to the General Council.

The Council also instructs all WTO bodies to which proposals in Category II have been referred to expeditiously complete the consideration of these proposals and report to the General Council, with clear recommendations for a decision, as soon as possible and no later than July 2005. In doing so these bodies will ensure that, as far as possible, their meetings do not overlap so as to enable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ese discussions.

**Technical Assistance:** the General Council recognizes the progress that has been made since the Doha Ministerial Conference in expanding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RTA) to developing countries and low-income countries in transition. In furthering this effort the Council affirms that such countries, and in particular least-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provided with enhanced TRTA and capacity building, to increase

their 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negotiations, to facilitate their implementation of WTO rules, and to enable them to adjust and diversify their economies. In this context the Council welcomes and further encourages the improved coordination with other agencies, including under the Integrated Framework for TRTA for the LDCs (IF) and the Joint Integrated Technical Assistance Programme (JITAP).

**Implementation:** concerning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the General Council reaffirms the mandates Ministers gave in paragraph 12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and the Doha Decision on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 and renews Members' determination to find appropriate solutions to outstanding issues. The Council instructs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negotiating bodies and other WTO bodies concerned to redouble their efforts to find appropriate solutions as a priority. Without prejudice to the positions of Members, the Council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to continue with his consultative process on all outstanding implementation issues under paragraph 12(b)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including on issues related to the extension of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23 of the TRIPS Agreement to products other than wines and spirits, if need be by appointing Chairpersons of concerned WTO bodies as his Friends and/or by holding dedicated consultations. The Director-General shall report to the TNC and the General Council no later than May 2005. The Council shall review progress and take any appropriate action no later than July 2005.

**Other Development Issues:** in the ongoing market access negotiations, recogniz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WTO and relevant provisions of GATT 1994, special attention shall be given to the specific trade and development related needs and concerns of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capacity constraints. These particular concerns of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relating to food security, rural development, livelihood, preferences, commodities and net food imports, as well as prior unilateral liberalisation,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appropriate, in the course of the Agriculture and NAMA negotiations. The trade-related issues identified for the fuller integration of small, vulnerable economies in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hould also be addressed, without creating a sub-category of Members, as part of a work programme, as mandated in paragraph 35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Least-Developed Countries:** the General Council reaffirms the commitments made at Doha concerning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renews its



determination to fulfil these commitments. Members will continue to take due account of the concerns of least-developed countries in the negotiations. The Council confirms that nothing in this Decision shall detract in any way from the special provisions agreed by Members in respect of these countries.

**(e) Services:** the General Council takes note of the report to the TNC by the Special Session of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1) and reaffirms Members' commitment to progress in this area of the negotiations in line with the Doha mandate. The Council adopts the recommendations agreed by the Special Session, set out in Annex C to this document, on the basis of which further progress in the services negotiations will be pursued. Revised offers should be tabled by May 2005.

**(f) Other negotiating bodies:**

**Rules, Trade & Environment and TRIPS:** the General Council takes note of the reports to the TNC by the Negotiating Group on Rules and by the Special Sessions of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and the TRIPS Council (2). The Council reaffirms Members' commitment to progress in all of these areas of the negotiations in line with the Doha mandates.

**Dispute Settlement:** the General Council takes note of the report to the TNC by the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3) and reaffirms Members' commitment to progress in this area of the negotiations in line with the Doha mandate. The Council adopts the TNC's recommendation that work in the Special Session should continue on the basis set out by the Chairman of that body in his report to the TNC.

**(g) Trade Facilitation:** taking note of the work done on trade facilitation by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under the mandate in paragraph 27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and the work carried out under the auspices of the General Council both prior to the Fifth Ministerial Conference and after its conclusion, the General Council decides by explicit consensus to commence negotiations on the basis of the modalities set out in Annex D to this document.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Investment, Interaction between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and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the Council agrees that these issues, mentioned in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in paragraphs 20-22, 23-25 and 26 respectively, will not form

part of the Work Programme set out in that Declaration and therefore no work towards negotiations on any of these issues will take place within the WTO during the Doha Round.

(h) Other elements of the Work Programme: the General Council reaffirms the high priority Ministers at Doha gave to those elements of the Work Programme which do not involve negotiations. Noting that a number of these issues are of particular interest to developing-country Members, the Council emphasizes its commitment to fulfil the mandates given by Ministers in all these areas. To this end, the General Council and other relevant bodies shall report in line with their Doha mandates to the Six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The moratoria covered by paragraph 11.1 of the Doha Ministerial Decision on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 and paragraph 34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are extended up to the Sixth Ministerial Conference.

2. The General Council agrees that this Decision and its Annexes shall not be used in any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under the DSU and shall not be used for interpreting the existing WTO Agreements.

3. The General Council calls on all Members to redouble their efforts towards the conclusion of a balanced overall outcome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in fulfilment of the commitments Ministers took at Doha. The Council agrees to continue the negotiations launched at Doha beyond the timeframe set out in paragraph 45 of the Doha Declaration, leading to the Six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Recalling its decision of 21 October 2003 to accept the generous offer of the Government of Hong Kong, China to host the Sixth Session, the Council further agrees that this Session will be held in December 2005.

## **Annex A**

### **Framework for Establishing Modalities in Agriculture**

1. The starting point for the current phase of the agriculture negotiations has been the mandate set out in Paragraph 13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This in turn built on the long-term objective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to establish a fair and market-oriented trading system

through a programme of fundamental reform. The elements below offer the additional precision required at this stage of the negotiations and thus the basis for the negotiations of full modalities in the next phase. The level of ambition set by the Doha mandate will continue to be the basis for the negotiations on agriculture.

2. The final balance will be found only at the conclusion of these subsequent negotiations and within the Single Undertaking. To achieve this balance, the modalities to be developed will need to incorporate operationally effective and meaningful provisions for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Agriculture is of critical importanc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they must be able to pursue agricultural policies that are supportive of their development goals,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food security and livelihood concerns. Non-trade concern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3 of the Doha Declaration, will be taken into account.

3. The reforms in all three pillars form an interconnected whole and must be approached in a balanced and equitable manner.

4. The General Council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cotton for a certain number of countries and its vital impor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LDCs. It will be addressed ambitiously, expeditiously, and specifically, within the agriculture negotiations. The provisions of this framework provide a basis for this approach, as does the sectoral initiative on cotton. The Special Session of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shall ensure appropriate prioritization of the cotton issue independently from other sectoral initiatives. A subcommittee on cotton will meet periodically and report to the Special Session of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to review progress. Work shall encompass all trade-distorting policies affecting the sector in all three pillars of market access, domestic support, and export competition, as specified in the Doha text and this Framework text.

5. Coherence between trade and development aspects of the cotton issue will be pursued as set out in paragraph 1.b of the text to which this Framework is annexed.

## **DOMESTIC SUPPORT**

**6.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calls for “substantial reductions in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With a view to achieving these substantial reductions, the negotiations in this pillar will ensure the following:**

-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remains an integral component of domestic support. Modalities to be developed will include longer implementation periods and lower reduction coefficients for all types of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and continued access to the provisions under Article 6.2.**
- There will be a strong element of harmonisation in the reductions made by developed Members. Specifically, higher levels of permitted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will be subject to deeper cuts.**
- Each such Member will make a substantial reduction in the overall level of its trade-distorting support from bound levels.**
- As well as this overall commitment, Final Bound Total AMS and permitted *de minimis* levels will be subject to substantial reductions and, in the case of the Blue Box, will be capped as specified in paragraph 15 in order to ensure results that are coherent with the long-term reform objective. Any clarification or development of rules and conditions to govern trade distorting support will take this into account.**

### **Overall Reduction: A Tiered Formula**

**7. The overall base level of 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as measured by the Final Bound Total AMS plus permitted *de minimis* level and the level agreed in paragraph 8 below for Blue Box payments, will be reduced according to a tiered formula. Under this formula, Members having higher levels of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will make greater overall reductions in order to achieve a harmonizing result. As the first instalment of the overall cut, in the first year and throughout the implementation period, the sum of all trade-distorting support will not exceed 80 per cent of the sum of Final Bound Total AMS plus permitted *de minimis* plus the Blue Box at the level determined in paragraph 15.**

**8. The following parameters will guide the further negotiation of this tiered formula:**

- **This commitment will apply as a minimum overall commitment. It will not be applied as a ceiling on reductions of over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should the separate and complementary formulae to be developed for Total AMS, *de minimis* and Blue Box payments imply, when taken together, a deeper cut in over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for an individual Member.**
- **The base for measuring the Blue Box component will be the higher of existing Blue Box payments during a recent representative period to be agreed and the cap established in paragraph 15**

**Final Bound Total AMS: A Tiered Formula**

**9. To achieve reductions with a harmonizing effect:**

- **Final Bound Total AMS will be reduced substantially, using a tiered approach.**
- **Members having higher Total AMS will make greater reductions.**
- **To prevent circumvention of the objective of the Agreement through transfers of unchanged domestic support between different support categories, product-specific AMSs will be capped at their respective average levels according to a methodology to be agreed.**
- **Substantial reductions in Final Bound Total AMS will result in reductions of some product-specific support.**

**10. Members may make greater than formula reduc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required level of cut in over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De Minimis**

**11. Reductions in *de minimis* will be negotiated taking into account the principle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Developing countries that allocate almost all *de minimis* support for subsistence and resource-poor**

farmers will be exempt.

12. Members may make greater than formula reduc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required level of cut in over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 **Blue Box**

13. Members recognize the role of the Blue Box in promoting agricultural reforms. In this light, Article 6.5 will be reviewed so that Members may have recourse to the following measures:

- **Direct payments under production-limiting programmes if:**
  - such payments are based on fixed and unchanging areas and yields; or
  - such payments are made on 85% or less of a fixed and unchanging base level of production; or
  - livestock payments are made on a fixed and unchanging number of head.

Or

- **Direct payments that do not require production if:**
  - such payments are based on fixed and unchanging bases and yields; or
  - livestock payments made on a fixed and unchanging number of head; and
  - such payments are made on 85% or less of a fixed and unchanging base level of production.

14. The above criteria, along with additional criteria will be negotiated. Any such criteria will ensure that Blue Box payments are less trade-distorting than AMS measures, it being understood that:

- Any new criteria would need to take account of the balance of WTO rights and obligations.
- Any new criteria to be agreed will not have the perverse effect of undoing ongoing reforms.

15. Blue Box support will not exceed 5% of a Member' s average total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ion during an historical period. The historical

period will be established in the negotiations. This ceiling will apply to any actual or potential Blue Box user from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In cases where a Member has placed an exceptionally large percentage of its trade-distorting support in the Blue Box, some flexibility will be provided on a basis to be agreed to ensure that such a Member is not called upon to make a wholly disproportionate cut.

### **Green Box**

16. Green Box criteria will be reviewed and clarified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Green Box measures have no, or at most minimal, trade-distorting effects or effects on production. Such a review and clarification will need to ensure that the basic concepts, principles and effectiveness of the Green Box remain and take due account of non-trade concerns. The improved obligations for monitoring and surveillance of all new disciplines foreshadowed in paragraph 48 below will be particularly important with respect to the Green Box.

### **EXPORT COMPETITION**

17.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calls for “reduction of, with a view to phasing out,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s an outcome of the negotiations, Members agree to establish detailed modalities ensuring the parallel elimination of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disciplines on all export measures with equivalent effect by a credible end date.

### **End Point**

18. The following will be eliminated by the end date to be agreed:

- Export subsidies as scheduled.
-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mes with repayment periods beyond 180 days.
- Terms and conditions relating to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mes with repayment periods of 180 days and below which are not in accordance with disciplines to be agreed. These disciplines will cover, inter alia, payment of interest, minimum interest rates, minimum premium requirements,

and other elements which can constitute subsidies or otherwise distort trade.

- Trade distorting practices with respect to exporting STEs including eliminating export subsidies provided to or by them, government financing, and the underwriting of losses. The issue of the future use of monopoly powers will be subject to further negotiation.
- Provision of food aid that is not in conformity with operationally effective disciplines to be agreed. The objective of such disciplines will be to prevent commercial displacement.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regards the provision of food aid by Members, including related humanitarian and developmental issues, will be addressed in the negotiations. The question of providing food aid exclusively in fully grant form will also be addressed in the negotiations.

19. Effective transparency provisions for paragraph 18 will be established. Such provisions, in accordance with standard WTO practice, will be consistent with commercial confidentiality considerations.

#### **Implementation**

20. Commitments and disciplines in paragraph 18 will be implemented according to a schedule and modalities to be agreed. Commitments will be implemented by annual instalments. Their phasing will take into account the need for some coherence with internal reform steps of Members.

21. The negotiation of the elements in paragraph 18 and their implementation will ensure equivalent and parallel commitments by Members.

####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22. Developing country Members will benefit from longer implementation periods for the phasing out of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23. Developing countries will continue to benefit from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9.4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for a reasonable period, to be negotiated, after the phasing out of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implementation of all disciplines



identified above are completed.

24. Members will ensure that the disciplines on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s to be agreed will make appropriate provision for differential treatment in favour of least-developed and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4 of the Decision on Measures Concerning the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the Reform Programme on Least-Developed and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Improved obligations for monitoring and surveillance of all new disciplines as foreshadowed in paragraph 48 will be critically important in this regard. Provisions to be agreed in this respect must not undermine the commitments undertaken by Members under the obligations in paragraph 18 above.

25. STEs in developing country Members which enjoy special privileges to preserve domestic consumer price stability and to ensure food security will receive special consideration for maintaining monopoly status.

#### **Special Circumstances**

26.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ich cannot be adequately covered by food aid, commercial export credits or preferential international financing facilities, ad hoc temporary financing arrangements relating to exports to developing countries may be agreed by Members. Such agreements must not have the effect of undermining commitments undertaken by Members in paragraph 18 above, and will be based on criteria and consultation procedures to be established.

#### **MARKET ACCESS**

27.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calls for “substantial improvements in market access.” Members also agreed tha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Members would be an integral part of all elements in the negotiations.

#### **The Single Approach: a Tiered Formula**

28. To ensure that a single approach for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y Members meets all the objectives of the Doha mandate, tariff reductions

will be made through a tiered formula that takes into account their different tariff structures.

29. To ensure that such a formula will lead to substantial trade expansion, the following principles will guide its further negotiation:

- **Tariff reductions will be made from bound rates. Substantial overall tariff reductions will be achieved as a final result from negotiations.**
- **Each Member (other than LDCs) will make a contribution. Operationally effective special and differential provisions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will be an integral part of all elements.**
- **Progressivity in tariff reductions will be achieved through deeper cuts in higher tariffs with flexibilities for sensitive products. Substantial improvements in market access will be achieved for all products.**

30. The number of bands, the thresholds for defining the bands and the type of tariff reduction in each band remain under negotiation. The role of a tariff cap in a tiered formula with distinct treatment for sensitive products will be further evaluated.

## **Sensitive Products**

### ***Selection***

31. Without undermining the overall objective of the tiered approach, Members may designate an appropriate number, to be negotiated, of tariff lines to be treated as sensitive, taking account of existing commitments for these products.

### ***Treatment***

32.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improvement’ will apply to each product.

33. ‘Substantial improvement’ will be achieved through combinations of tariff quota commitments and tariff reductions applying to each product. However, balance in this negotiation will be found only if the final

negotiated result also reflects the sensitivity of the product concerned.

34. Some MFN-based tariff quota expansion will be required for all such products. A base for such an expansion will be established, taking account of coherent and equitable criteria to be developed in the negotiations. In order not to undermine the objective of the tiered approach, for all such products, MFN based tariff quota expansion will be provided under specific rules to be negotiated taking into account deviations from the tariff formula.

#### **Other Elements**

35. Other elements that will give the flexibility required to reach a final balanced result includ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in-quota tariff rates, and operationally effective improvements in tariff quota administration for existing tariff quotas so as to enable Members, and particularly developing country Members, to fully benefit from the market access opportunities under tariff rate quotas.

36. Tariff escalation will be addressed through a formula to be agreed.

37. The issue of tariff simplification remains under negotiation.

38. The question of the special agricultural safeguard (SSG) remains under negotiation.

####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39. Having regard to their rural development, food security and/or livelihood security needs,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an integral part of all elements of the negotiation, including the tariff reduction formula, the number and treatment of sensitive products, expansion of tariff rate quotas, and implementation period.

40. Proportionality will be achieved by requiring lesser tariff reduction commitments or tariff quota expansion commitments from developing country Members.

41. Developing country Members will have the flexibility to designate an

appropriate number of products as Special Products, based on criteria of food security, livelihood security and rural development needs. These products will be eligible for more flexible treatment. The criteria and treatment of these products will be further specified during the negotiation phase and will recognize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Special Products to developing countries.

42. A 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 will be established for use by developing country Members.

43. Full implementation of the long-standing commitment to achieve the fullest liberalization of trade in tropical agricultural products and for products of particular importance to the diversification of production from the growing of illicit narcotic crops is overdue and will be addressed effectively in the market access negotiations.

44. The importance of long-standing preferences is fully recognised. The issue of preference erosion will be addressed. For the further consideration in this regard, paragraph 16 and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TN/AG/W/1/Rev.1 will be used as a reference.

#### **LEAST- DEVELOPED COUNTRIES**

45. Least-Developed Countries, which will have full access to all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provisions above, are not required to undertake reduction commitments. Developed Members, and developing country Members in a position to do so, should provide duty-free and quota-free market access for products originating from least-developed countries.

46. Work on cotton under all the pillars will reflect the vital importance of this sector to certain LDC Members and we will work to achieve ambitious results expeditiously.

#### **RECENTLY ACCEDED MEMBERS**

47. The particular concerns of recently acceded Members will be effectively addressed through specific flexibility provisions.

## **MONITORING AND SURVEILLANCE**

**48. Article 18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will be amended with a view to enhancing monitoring so as to effectively ensure full transparency, including through timely and complete notifications with respect to the commitments in market access, domestic support and export competition. The particular concerns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regard will be addressed.**

## **OTHER ISSUES**

**49. Issues of interest but not agreed: sectoral initiatives, differential export taxes, GIs.**

**50. Disciplines on export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in Article 12.1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will be strengthened.**

## **Annex B**

### **Framework for Establishing Modalities in 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

**1. This Framework contains the initial elements for future work on modalities by the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Additional negotiations are required to reach agreement on the specifics of some of these elements. These relate to the formula, the issues concerning the treatment of unbound tariffs in indent two of paragraph 5, the flexibilities for developing-country participants, the issue of participation in the sectorial tariff component and the preferences. In order to finalize the modalities, the Negotiating Group is instructed to address these issues expeditiously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mandate of paragraph 16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and the overall balance therein.**

**2. We reaffirm that negotiations on 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 shall aim to reduce or as appropriate eliminate tariffs, including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ariff peaks, high tariffs, and tariff escalation, as well as non-tariff barriers, in particular on products of export interest to developing countries. We also reaffirm the importance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and less than full reciprocity in reduction commitments as integral parts of the modalities.

3. We acknowledge the substantial work undertaken by the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and the progress towards achieving an agreement on negotiating modalities. We take note of the constructive dialogue on the Chair's Draft Elements of Modalities (TN/MA/W/35/Rev.1) and confirm our intention to use this document as a reference for the future work of the Negotiating Group. We instruct the Negotiating Group to continue its work, as mandated by paragraph 16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with its corresponding references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Article XXVIII bis of GATT 1994 and to the provisions cited in paragraph 50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basis set out below.

4. We recognize that a formula approach is key to reducing tariffs, and reducing or eliminating tariff peaks, high tariffs, and tariff escalation. We agree that the Negotiating Group should continue its work on a non-linear formula applied on a line-by-line basis which shall take fully into account the special needs and interest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y participants, including through less than full reciprocity in reduction commitments.

5. We further agree on the following elements regarding the formula:

- product coverage shall be comprehensive without a priori exclusions;
- tariff reductions or elimination shall commence from the bound rates after full implementation of current concessions; however, for unbound tariff lines, the basis for commencing the tariff reductions shall be [two] times the MFN applied rate in the base year;
- the base year for MFN applied tariff rates shall be 2001 (applicable rates on 14 November);
- credit shall be given for autonomous liberalization by developing countries provided that the tariff lines were bound on an MFN basis in the WTO since the conclusion of the Uruguay Round;
- all non-*ad valorem* duties shall be converted to *ad valorem* equivalents on the basis of a methodology to be determined and bound in *ad valorem* terms;
- negotiations shall commence on the basis of the HS96 or HS2002 nomenclature, with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s to be finalized in HS2002 nomenclature;

- the reference period for import data shall be 1999–2001.

6. We furthermore agree that, as an exception, participants with a binding coverage of non-agricultural tariff lines of less than [35] percent would be exempt from making tariff reductions through the formula. Instead, we expect them to bind [100] percent of non-agricultural tariff lines at an average level that does not exceed the overall average of bound tariffs for all developing countries after full implementation of current concessions.

7. We recognize that a sectorial tariff component, aiming at elimination or harmonization is another key element to achieving the objectives of paragraph 16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with regard to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ariffs, in particular on products of export interest to developing countries. We recognize that participation by all participants will be important to that effect. We therefore instruct the Negotiating Group to pursue its discussions on such a component, with a view to defining product coverage, participation, and adequate provisions of flexibility for developing-country participants.

8. We agree that developing-country participants shall have longer implementation periods for tariff reductions. In addition, they shall be given the following flexibility:

- a) applying less than formula cuts to up to [10] percent of the tariff lines provided that the cuts are no less than half the formula cuts and that these tariff lines do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total value of a Member's imports; or
- b) keeping, as an exception, tariff lines unbound, or not applying formula cuts for up to [5] percent of tariff lines provided they do not exceed [5] percent of the total value of a Member's imports.

We furthermore agree that this flexibility could not be used to exclude entire HS Chapters.

9. We agree that least-developed country participants shall not be required to apply the formula nor participate in the sectorial approach, however, as part of their contribution to this round of negotiations, they are expected to substantially increase their level of binding commitments.

10. Furthermore, in recognition of the need to enhance the integration of least-developed countries in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support the diversification of their production and export base, we call upon developed-country participants and other participants who so decide, to grant on an autonomous basis duty-free and quota-free 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 originating from least-developed countries by the year [...].

11. We recognize that newly acceded Members shall have recourse to special provisions for tariff reductions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their extensive market access commitments undertaken as part of their accession and that staged tariff reductions are still being implemented in many cases. We instruct the Negotiating Group to further elaborate on such provisions.

12. We agree that pending agreement on core modalities for tariffs, the possibilities of supplementary modalities such as zero-for-zero sector elimination, sectorial harmonization, and request & offer, should be kept open.

13. In addition, we ask developed-country participants and other participants who so decide to consider the elimination of low duties.

14. We recognize that NTBs are an integral and equally important part of these negotiations and instruct participants to intensify their work on NTBs. In particular, we encourage all participants to make notifications on NTBs by 31 October 2004 and to proceed with identification, examination, categorization, and ultimately negotiations on NTBs. We take note that the modalities for addressing NTBs in these negotiations could include request/offer, horizontal, or vertical approaches; and should fully take into account the principle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y participants.

15. We recognize that appropriate studies and capacity building measures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the modalities to be agreed. We also recognize the work that has already been undertaken in these areas and ask participants to continue to identify such issues to improve participation in the negotiations.

16. We recognize the challenges that may be faced by non-reciprocal preference beneficiary Members and those Members that are at present



highly dependent on tariff revenue as a result of these negotiations on non-agricultural products. We instruct the Negotiating Group to take into consideration, in the course of its work, the particular needs that may arise for the Members concerned.

17. We furthermore encourage the Negotiating Group to work closely with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in Special Session with a view to addressing the issue of non-agricultural environmental goods covered in paragraph 31 (iii)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 **Annex C**

#### **Recommendations of the Special Session of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 (a) Members who have not yet submitted their initial offers must do so as soon as possible.**
- (b) A date for the submission of a round of revised offers sh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feasible.**
- (c) With a view to providing effective market access to all Members and in order to ensure a substantive outcome, Members shall strive to ensure a high quality of offers, particularly in sectors and modes of supply of export interest to developing countries, with special attention to be given to least-developed countries.**
- (d) Members shall aim to achieve progressively higher levels of liberalization with no a priori exclusion of any service sector or mode of supply and shall give special attention to sectors and modes of supply of export interest to developing countries. Members note the interest of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other Members, in Mode 4.**
- (e) Members must intensify their efforts to conclude the negotiations on rule-making under GATS Articles VI:4, X, XIII and XV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mandates and deadlines.**
- (f) Targeted technical assistance should be provided with a view to enabling developing countries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the negotiations.**
- (g) For the purpose of the Sixth Ministerial meeting, the Special Session**

of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hall review progress in these negotiations and provide a full report to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including possible recommendations.

## **Annex D**

### **Modalities for Negotiations on Trade Facilitation**

- 1. Negotiations shall aim to clarify and improve relevant aspects of Articles V, VIII and X of the GATT 1994 with a view to further expediting the movement,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including goods in transit (4). Negotiations shall also aim at enhancing technical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in this area. The negotiations shall further aim at provisions for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customs or any other appropriate authorities on trade facilitation and customs compliance issues.**
  
- 2.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s shall take fully into account the principle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Members recognize that this principle should extend beyond the granting of traditional transition periods for implementing commitments. In particular, the extent and the timing of entering into commitments shall be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capacitie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Members. It is further agreed that those Members would not be obliged to undertake investments in infrastructure projects beyond their means.**
  
- 3.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will only be required to undertake commitment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ir individual development, financial and trade needs or their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capabilities.**
  
- 4. As an integral part of the negotiations, Members shall seek to identify their trade facilitation needs and priorities, particularly those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shall also address the concern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related to cost implications of proposed measures.**
  
- 5. It is recognized that the provision of technical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is vital for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to enable them to fully participate in and benefit from the negotiations.**

**Members, in particular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commit themselves to adequately ensure such support and assistance during the negotiations (5).**

**6. Support and assistance should also be provided to help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implement the commitments resulting from the negotiation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ure and scope. In this context, it is recognized that negotiations could lead to certain commitments whose implementation would require support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on the part of some Members. In these limited cases, developed-country Members will make every effort to ensure support and assistance directly related to the nature and scope of the commitments in order to allow implementation. It is understood, however, that in cases where required support and assistance for such infrastructure is not forthcoming, and where a developing or least-developed Member continues to lack the necessary capacity, implementation will not be required. While every effort will be made to ensure the necessary support and assistance, it is understood that the commitments by developed countries to provide such support are not open-ended.**

**7. Members agree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the support and assistance provided and its ability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s.**

**8. In order to make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more effective and operational and to ensure better coherence, Members shall invit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IMF, OECD, UNCTAD, WCO and the World Bank to undertake a collaborative effort in this regard.**

**9. Due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relevant work of the WCO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is area.**

**10. Paragraphs 45-51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shall apply to these negotiations. At its first meeting after the July session of the General Council,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shall establish a Negotiating Group on Trade Facilitation and appoint its Chair. The first meeting of the Negotiating Group shall agree on a work plan and schedule of meetings.**

## VII. 중국산 농산물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천 US달러)

HSK	한글품명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0207.14.1010	닭다리(냉동)	364	83	1243	324	16	1454
0207.14.1020	닭가슴(냉동)	0	439	3078	1962	0	68
0207.14.1090	닭기타절단육(냉동)	455	345	1146	758	0	103
0207.33.0000	오리.거위.기니아(미절단/냉동)	78	97	1279	119	0	71
0207.36.1000	오리.거위.기니아(절단/냉동)	2945	917	3380	2877	0	787
0208.90.9090	육식용설육기타(해양동물의것제외)	6	0	52	24	11	0
0407.00.9000	조란기타	461	503	519	494	415	287
0408.99.9000	조란기타	97	12	7	0	11	0
0410.00.3000	로얄제리	752	793	811	673	534	631
0410.00.9000	식용의 동물성생산품 기타	39	48	46	44	40	159
0501.00.0000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 세정 여부 불문)와 그 웨이스트	556	723	105	69	23	0
0502.10.0000	돼지털.멧돼지털 및 그 웨이스트	759	1170	994	1500	1501	838
0502.90.2000	염소털	91	222	318	431	539	760
0502.90.9000	동물털기타	144	209	176	167	231	503
0503.00.1010	마모(정돈한 것)	121	151	171	167	178	155
0503.00.1090	마모기타	0	5	2	44	12	45
0505.10.0000	새의솜털및충전재용깃털	12650	13308	15344	25464	16140	11956
0506.90.9000	뺨와혼코어,분(기타)	6	16	15	16	13	4
0507.90.1110	녹용(전지)	986	1000	553	646	737	639
0507.90.1190	녹용(기타)	2907	1541	302	251	849	57
0507.90.1200	녹각	407	1554	411	365	564	311
0507.90.2010	귀갑과 귀관	19	93	42	130	89	87
0507.90.2090	동물의 부리 털 발굽 기타	5	37	5	32	10	58
0510.00.5000	오령지	9	13	21	14	15	13
0510.00.9030	합개	1	18	13	18	9	17
0510.00.9090	동물성생산품기타	27	70	63	25	132	155
0511.99.9020	누에번데기	74	102	19	15	29	15

0511.99.9030	동물의사체(제3류물품의사체를제외)	17	18	0	12	15	25
0511.99.9090	동물의사체(기타/비식용)	917	1011	803	1003	1106	619
0601.10.9000	인경, 괴경, 괴근기타(휴면상태의것)	52	6	8	3	3	1
0602.10.9000	산식물 기타(뿌리없는삽수.접수)	144	72	228	81	98	26
0602.20.9000	과수.유실수(기타)	42	5	18	137	33	4
0602.90.1010	난초	1362	1391	1075	650	6	272
0602.90.1020	카네이션	9	17	7	1	886	0
0602.90.9040	버섯의종균	395	502	757	582	565	92
0602.90.9090	산식물(기타)	1845	2112	1093	617	202	68
0603.10.1000	카네이션(절화/신선)	168	111	142	222	28	0
0603.90.0000	절화와꽃(기타/신선이외)	2	26	10	29	14	14
0604.10.0000	이끼와지의	81	151	59	87	169	212
0604.91.9000	식물의 가지 및 기타부분(기타/신선)	1	2	0	85	0	4
0604.99.0000	식물잎.가지(기타/신선이외)	4	20	21	56	18	3
0703.10.1000	양파(신선/냉장)	8452	25	1333	313	138	0
0703.10.2000	쪽파(신선/냉장)	952	0	25	20	32	184
0703.90.1000	리크(신선/냉장)	129	102	51	42	58	0
0703.90.9000	기타과속채소(신선/냉장)	1255	64	209	191	291	533
0704.10.0000	꽃양배추.결구브로콜리(신선/냉장)	349	88	6	30	16	0
0704.90.1000	양배추(신선/냉장)	923	304	24	351	489	10
0704.90.2000	배추(신선/냉장)	1522	478	49	1653	55	0
0704.90.9000	배추(기타/신선/냉장)	14	1	0	0	3	0
0706.10.1000	당근(신선/냉장)	11824	5218	3540	2546	1116	1052
0706.90.2000	고추냉이와 겨자무(신선/냉장)	9	2	0	0	32	40
0706.90.9000	기타식용뿌리(신선/냉장)	17625	12394	10268	9468	10107	6053
0709.51.9000	기타(신선/냉장)(아가리쿠스속의 버섯)	9	66	2	12	13	10
0709.90.1000	고사리(신선/냉장)	0	1	23	10	52	23
0709.90.2000	고비(신선/냉장)	8	3	0	6	33	0
0709.90.9000	기타채소(신선/냉장)	8027	5646	5266	5555	2972	1383
0710.10.0000	감자(냉동)	41	22	9	6	244	1
0710.22.0000	콩(냉동/비그나종.파세러스종)	434	447	317	241	93	0
0710.29.0000	기타채두류(냉동)	225	148	133	146	30	0
0710.30.0000	시금치류(냉동)	164	96	102	45	3	0

0710.40.0000	스위트콘(냉동)	18	90	30	14	0	12
0710.80.1000	양파(냉동)	483	95	86	43	40	19
0710.80.2000	마늘(냉동)	7064	6196	5258	2456	7657	3853
0710.80.4000	당근(냉동)	119	76	43	30	3	0
0710.80.6000	송이버섯(냉동)	3577	2172	2715	1874	1006	0
0710.80.9000	기타채소(냉동)	3962	6717	5250	2132	1144	1002
0710.90.0000	채소류의 혼합물(냉동)	286	318	106	96	8	7
0711.40.0000	오이류(일시저장처리)	1461	1045	498	526	160	151
0711.90.3000	죽순(일시저장처리)	10	30	6	0	46	0
0711.90.5010	고사리(일시저장처리)	0	1	0	59	39	0
0711.90.5020	고비(일시저장처리)	0	3	0	0	22	0
0711.90.5099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7298	4442	4465	7855	6576	2819
0711.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105	83	39	92	131	83
0712.20.0000	양파(건조)	710	966	427	1404	1276	410
0712.90.1000	마늘(건조)	361	30	20	4891	365	149
0712.90.2010	고사리(건조)	16197	16936	14776	15820	16748	9435
0712.90.2020	무(건조)	1559	667	744	1296	785	696
0712.90.2030	파(건조)	6200	5501	6108	4820	4458	4881
0712.90.2040	당근(건조)	2019	1466	1221	491	457	646
0712.90.2050	호박(건조)	321	230	171	154	39	11
0712.90.2060	양배추(건조)	913	705	482	800	799	338
0712.90.2070	토란줄기(건조)	19	19	13	0	18	30
0712.90.2080	고구마줄기(건조)	240	168	72	186	118	292
0712.90.2093	감자(건조)	0	36	73	44	67	56
0712.90.2094	고비(건조)	833	1014	1183	1145	1505	1553
0712.90.2099	기타채소(건조)	2210	2182	1837	2057	1674	1521
0712.90.9000	채소류의 혼합물(건조)	417	360	323	231	223	38
0713.10.1000	완두(종자용)	61	34	1	50	32	13
0713.31.9000	녹두(기타)	831	944	915	1018	1006	403
0713.32.9000	팥(기타)	10265	5522	9781	9944	8201	6223
0713.33.9000	강남콩(기타)	1801	1436	1167	1261	1103	740
0713.39.0000	기타콩	204	175	184	1	23	84
0713.90.0000	건채두류(기타)	11	14	21	20	37	24

0714.20.4000	고구마(냉동)	80	127	99	43	48	21
0714.90.1090	췌뿌리(기타)	356	337	533	380	332	205
0714.90.9090	서류(기타)	217	311	282	357	273	51
0802.12.0000	아몬드(탈각)	57	358	127	0	22	0
0802.31.0000	호도(미탈각)	100	284	84	67	295	0
0802.40.1000	밤(미탈각)	770	582	215	95	262	364
0802.90.1020	잣(탈각)	162	118	84	0	143	284
0811.10.0000	초본류딸기(냉동)	1269	1285	382	1128	804	300
0811.90.1000	밤(냉동)	2858	169	960	1531	209	0
0811.90.9000	기타과실.견과류(냉동)	9554	10441	5856	5116	5646	0
0813.30.0000	사과(건조)	5	31	1	0	15	0
0813.40.1000	감(건조)	5195	2454	1484	1467	981	101
0813.40.2000	대추(건조)	202	172	169	283	218	80
0813.40.9000	기타과실(건조)	88	179	2423	7	0	1
0814.00.1000	감귤류의껍질(신선/냉동)	87	70	87	225	601	111
0901.11.0000	커피(볶지않은것/카페인미제거)	395	83	0	0	394	399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않은것/3kg이하포장)	3	2	4	4	2	2
0902.20.0000	녹차(기타/발효하지않은것)	133	53	14	38	23	9
0902.30.0000	홍차(발효차)와부분발효차(3kg이하포장)	141	70	64	39	31	38
0902.40.0000	홍차기타(발효차)와 부분발효차기타	201	261	263	203	149	54
0904.11.0000	후추(파쇄 또는 분쇄하지않은것)	113	26	18	1	18	7
0904.20.1000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않은것)	14584	10451	12868	9406	9994	13569
0904.20.2000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한것)	2511	1614	1093	962	517	198
0906.10.1000	계피(미분쇄)	969	131	1156	1454	2096	1756
0906.20.1000	계피(분쇄)	6	5	19	6	14	138
0906.20.2000	계피나무꽃(분쇄)	0	5	4	10	2	6
0907.00.0000	정향(과실.꽃및화경에한함)	9	1	11	37	3	11
0908.10.0000	육두구	11	24	8	12	4	9
0908.30.0000	소두구(백두구)	3	48	34	109	87	91
0909.10.0000	아니스또는대회향의씨	20	50	2	55	21	11
0909.30.0000	커민의씨	0	1	2	0	0	1
0909.50.0000	회향의씨와쥬니퍼의열매	85	87	50	59	21	58
0910.10.0000	생강	2324	4065	5172	1603	220	845

0910.30.0000	심황(강황)	15	22	14	22	45	24
0910.99.0000	향신료 기타	38	114	49	14	1	7
1001.90.9020	밀(사료용)	94226	58382	37490	0	353	2467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740560	531006	273773	606306	133457	334097
1005.90.9000	옥수수 기타	167138	105758	24999	53510	2157	3096
1006.20.1000	메현미	36027	21727	18289	32112	49088	16048
1007.00.9000	수수(기타)	804	757	702	620	948	452
1008.10.0000	메밀	364	528	561	512	345	287
1008.20.1090	조(기타)	935	843	680	932	1197	851
1008.20.9000	밀리트기타	2846	1813	2316	1784	1334	859
1101.00.1000	밀가루	538	91	42	15	1	5
1102.20.0000	옥수수가루	201	133	187	110	6	0
1104.29.1000	가공곡물(울무의것)	40	21	74	34	5	7
1104.29.9000	가공곡물(기타의것)	14	0	2	79	5	0
1104.30.9000	곡물배아(기타)	63	1	0	1	5	1
1106.10.0000	건조한채두류의것(제0713호의것)	23	72	2	31	1	9
1106.20.9000	사고,뿌리괴경(기타)	28	118	292	488	847	324
1106.30.0000	분.조분과분말(제8류물품)	1	0	0	0	1	0
1108.11.0000	전분(밀의것)	238	208	126	24	6	0
1108.13.0000	전분(감자의것)	7	52	0	0	3	0
1108.19.1000	전분(고구마의것)	10004	9738	8258	8692	7485	7627
1108.19.9000	전분(기타의것)	413	315	187	163	200	110
1201.00.1000	대두(채유및박용)	0	15	0	8	69	11
1201.00.9000	대두(기타)	9459	8295	8514	8439	7811	2846
1202.10.0000	낙화생(미탈각)	101	98	129	111	142	116
1202.20.0000	낙화생(탈각)	1010	114	996	1337	689	3343
1206.00.0000	해바라기씨(과쇄여부불문)	421	149	180	74	84	76
1207.20.0000	면실	820	799	484	382	1636	95
1207.30.0000	피마자	18	17	11	31	25	22
1207.40.0000	참깨	42943	28564	16088	25970	36528	5750
1207.60.0000	잇꽃씨	191	202	256	241	139	33
1207.99.1000	들깨씨	11449	8646	152	4788	6276	6100
1207.99.9000	기타씨	2013	2262	2284	882	882	619



1208.10.0000	종자.분.조분(대두의것)	10651	10575	3971	1253	581	160
1209.29.9000	사료용식물종자 기타	781	2073	2071	2490	789	286
1209.30.0000	화초용초본식물의종자	195	48	115	136	84	90
1209.99.1090	기타산립수종자	123	347	896	437	151	192
1209.99.2000	과수목의종자	81	80	110	103	108	125
1209.99.4000	잔디종자	146	49	77	251	206	285
1209.99.9000	기타종자	503	798	514	667	423	329
1211.10.0000	감초	2486	3672	3651	5181	5068	4070
1211.20.1100	인삼류(수삼)	32	0	39	7	1	0
1211.20.1220	인삼류(백삼/미삼)	0	176	188	0	99	232
1211.20.1240	인삼류(백삼/잡삼)	3	0	22	0	2	0
1211.20.1320	인삼류(홍삼/미삼)	137	229	35	0	12	0
1211.20.9900	인삼류(기타)	10	6	5	6	23	0
1211.90.1000	부자	118	221	443	565	232	199
1211.90.2000	황련	708	453	949	1609	604	456
1211.90.3000	원지	751	926	888	1273	980	757
1211.90.4000	패모	339	217	249	327	155	64
1211.90.5000	두충	109	297	10	14	0	2
1211.90.9010	사인	183	221	21	267	154	45
1211.90.9020	산조인	116	214	159	255	300	250
1211.90.9030	사군자	8	8	9	4	10	1
1211.90.9040	용안육	66	115	85	179	178	44
1211.90.9050	산사자	421	354	279	342	253	243
1211.90.9060	연자육	27	51	56	30	9	71
1211.90.9070	박하	42	4	68	66	6	6
1211.90.9090	기타식물(향료, 의료용등)	25955	36654	28654	35891	26337	20947
1212.30.0000	살구.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또는 자두의핵	818	983	738	742	883	644
1212.99.1000	치커리뿌리(시코리엄인티부스새티범변종 의것으로서 볶지 아니한것)	59	66	12	20	5	37
1212.99.2000	구약구의 뿌리	2329	2200	1491	1058	300	299
1212.99.3000	화분	1226	1716	845	1323	492	229
1212.99.9000	식물성생산품기타(식용)	68	134	162	114	9	0
1213.00.0000	곡물의 질과 껍질	2843	921	860	1175	1316	862

1214.90.1000	사료용근채류	29	0	0	12	0	110
1214.90.9010	알팔파 베일	186	66	58	4	16	0
1214.90.9090	사료용근채류 (기타)	5242	783	51	2751	2753	1334
1301.10.9000	기타 락	8	8	2	1	1	6
1301.90.9000	락검기타	73	115	108	171	271	49
1302.12.0000	감초의 컷(액즙/엑스)	452	229	397	233	527	692
1302.19.1110	인삼엑스(백삼)	2884	2216	1755	1102	455	241
1302.19.1190	인삼액즙.엑스기타(백삼)	14	0	241	124	30	113
1302.19.1900	인삼류(기타인삼액즙.엑스)	8	5	0	6	0	6
1302.19.3000	생칠	9	29	8	22	15	12
1302.19.9099	식물성액즙과엑스(기타)	3674	3127	3039	2020	2402	1230
1302.39.0000	식물성점질물기타	1402	1050	811	2783	2686	1558
1401.10.9000	대(기타죽)	197	179	107	207	209	199
1401.20.1000	등(조개거나인발한것)	3	0	0	0	14	6
1401.20.9000	등(기타)	24	29	23	0	85	24
1401.90.9000	기타편조물용식물성재료	1227	266	174	487	250	84
1403.00.0000	청소용 식물성 재료(수수류 등)	24	17	25	14	13	4
1404.10.1000	오배자(염색.유연용)	7	7	9	2	2	2
1404.20.0000	면린터	0	2	0	23	11	78
1404.90.2010	수피(저피)	1	0	18	0	7	0
1404.90.2090	수피(기타)	20	0	0	14	12	0
1404.90.3090	잎(기타식물)	1	1	2	2	1	0
1404.90.9000	기타 식물성생산물	2232	2159	2226	2454	2593	2516
1506.00.9000	기타동물성유지	241	361	145	137	158	72
1515.40.0000	동유와 그 분획물	8595	4201	2178	3838	3636	3582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743	827	347	0	48	4
1515.90.9090	기타비휘발성 식물성유지	528	554	306	93	42	10
1516.20.2090	기타식물성유지와그분획물	170	158	61	1	27	0
1517.90.9000	마가린류 유지기타	133	127	104	230	77	14
1518.00.9000	기타동. 식물성유지	51	97	12	18	3	0
1520.00.0000	글리세롤(조상의것)	1	1072	341	956	376	0
1521.90.2000	밀납	217	330	154	122	132	145
1602.32.9000	닭고기(기타조제저장)	580	1	8	0	0	4

1602.49.1000	돼지고기기타부위(밀폐용기의것)	152	107	227	214	183	131
1602.90.1000	조제육설육(밀폐용기의것)	8	0	20	21	54	93
1602.90.9000	조제육.설육기타	3725	4004	3610	3143	2940	2268
1603.00.1000	육엑스	1644	1215	858	856	454	262
1702.40.1000	포도당(과당20%이상 50%미만)	0	8	6	9	3	6
1702.90.2000	캐러멜당	309	429	390	357	275	17
1702.90.9000	당류(기타)	2278	632	346	66	19	0
1704.10.0000	추잉껌(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불문)	452	278	151	414	55	0
1704.90.1000	감초엑스(과자로 만들어진것 제외)	2	5	27	7	0	13
1704.90.2010	드롭프스	867	1490	1013	849	591	157
1704.90.2090	캔디류기타	5794	4742	3024	1452	363	124
1704.90.9000	설탕과자기타	4854	5242	4274	3570	2595	1963
1806.20.1000	초코렛및초코렛과자	233	145	216	225	146	81
1806.31.1000	초코렛및초코렛과자(다른것으로 속을채운것)	2215	1395	1133	1109	1034	407
1806.31.9000	초코렛(기타/다른것으로 속을 채운것)	20	3	35	163	91	51
1806.32.1000	초코렛및초코렛과자(속을 채우지않은것)	984	465	269	4	6	0
1806.90.1000	초코렛및초코렛과자(기타)	1743	1308	1182	934	215	257
1806.90.9090	조제식료품기타(기 타)	37	0	46	123	15	21
1901.20.9000	베이커리제조용품(기 타)	207	0	19	1269	1020	488
1901.90.9099	조제식료품기타(기 타)	5546	5640	6742	4115	1584	267
1902.19.1000	국수	416	281	28	88	27	3
1902.19.2000	당면	21380	22891	20554	19618	19708	17774
1902.19.3000	냉면	0	14	1	0	34	34
1902.19.9000	파스타(기타/조제않음)	3709	3316	1328	258	101	42
1902.20.0000	파스타(속을 채움)	2598	2470	1749	1341	922	885
1902.30.1010	라면	261	5	6	0	5	0
1902.30.9000	파스타(기타)	177	187	136	164	188	183
1904.10.3000	퍼프드 라이스	77	118	137	114	69	12
1904.10.9000	곡물조제식료품(기타)	325	292	245	265	91	84
1904.90.1000	쌀 조제품(코코아 미포함)	2518	2029	2418	2342	1508	1325
1904.90.9000	곡물조제품(기타)	203	261	133	175	46	87
1905.90.1040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3359	2198	2334	2725	221	886
1905.90.1050	미과	7048	9344	8594	3201	1	2

1905.90.1090	베이커리제품기타	1053	788	957	433	262	180
1905.90.9090	베이커리제품기타	390	288	95	132	92	85
2001.90.9050	염교(조제저장처리)	1116	1091	741	832	813	322
2001.90.9060	마늘(조제저장처리)	3282	2198	2102	1636	1322	900
2001.90.9090	식용식물기타(조제저장처리)	1462	973	996	535	278	252
2002.90.1000	토마토페이스트	5414	5537	4316	3431	4959	2708
2003.10.9000	기타 아가리쿠스속의 버섯(조제저장처리)	23	79	154	271	417	296
2004.10.0000	감자(조제저장처리/냉동)	10	237	5	4	14	10
2004.90.9000	기타채소혼합물등(조제저장처리/냉동)	1173	1158	1179	923	631	376
2005.20.9000	감자(기타/조제저장처리)	256	68	45	40	25	29
2005.51.2000	팥(탈각/조제저장처리)	224	495	405	640	0	5
2005.51.9000	콩(기타/탈각/조제저장처리)	208	3	1	19	30	0
2005.59.2000	팥(기타/조제저장처리)	1814	1706	2482	1897	65	1
2005.59.9000	콩(기타/조제저장처리)	9	4	0	58	47	79
2005.60.0000	아스파라거스(조제저장처리)	43	52	38	83	39	12
2005.80.0000	스위트콘(자메이스변종, 카라타/조제저장처리)	0	59	0	29	60	0
2006.00.3000	생강(설탕저장처리)	174	224	232	188	197	184
2006.00.9090	기타식물(설탕저장처리)	291	165	136	733	48	0
2007.99.1000	잼.제리.마아말레이드기타	0	58	0	9	15	35
2007.99.9000	견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327	453	399	354	316	241
2008.11.1000	피넛버터(조제저장처리)	1275	1222	837	878	840	579
2008.11.9000	낙화생기타(조제저장처리)	19292	19348	16925	18654	19610	10848
2008.19.2000	코코넛(조제저장처리)	5	9	6	5	1	0
2008.19.9000	견과.땅콩외 기타의씨류(조제저장처리)	9984	7726	3191	6899	2256	610
2008.20.0000	파인애플(조제저장처리)	33	14	7	0	12	12
2008.30.0000	감귤류과실(조제저장처리)	1837	1341	1008	1144	217	116
2008.40.0000	배(조제저장처리)	35	33	92	461	172	2518
2008.60.0000	버찌(조제저장처리)	375	201	275	4	65	96
2008.70.1000	복숭아(설탕첨가/밀폐용기의것)(넥터린 포함)	648	2081	2242	1436	1166	1727
2008.99.1000	포도(조제저장처리)	14	0	0	0	0	4
2008.99.2000	사과(조제저장처리)	97	37	2	0	5	0
2008.99.9000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4809	2515	1809	1523	764	754

2009.80.1010	복숭아주스	12	35	61	37	0	185
2009.80.1090	과실주스기타	983	2442	5701	1982	97	293
2009.80.2000	채소주스	210	182	182	179	29	0
2009.90.9000	혼합주스(기타)	9	14	28	7	6	2
2101.20.9000	차, 마태등 조제품(기타)	2848	2172	1668	1914	1332	884
2101.30.1000	볶음치커리, 커피대용물(보리의것)	1331	1516	2158	2187	2645	1621
2102.10.3000	제빵효모	117	55	15	31	41	31
2102.10.9000	활성효모기타	0	15	5	0	0	50
2102.20.2000	누룩	49	85	33	70	1	0
2102.20.4010	스피루리나(정제상의것)	34	0	0	0	19	0
2102.20.4090	스피루리나(기타)	108	89	66	66	24	15
2102.20.9000	불활성효모, 미생물기타	87	0	0	7	12	0
2103.10.0000	간장	45	46	55	27	1	0
2103.30.1000	겨자의 분, 조분	17	0	14	0	0	36
2103.90.1010	된장	732	196	110	82	14	8
2103.90.1020	춘장	105	21	5	6	11	0
2103.90.1030	고추장	81	46	23	413	358	310
2103.90.9030	혼합조미료	12868	14467	14438	11469	10490	9003
2103.90.9040	메주	1020	902	458	299	139	127
2103.90.9090	혼합조미. 조제품기타	32019	24691	21172	16443	10113	5101
2104.10.1000	수프. 브로드. 제조품(육류의것)	3102	3291	2549	2441	1705	1403
2106.10.9010	기타(단백질함량이 48%이상 함유조제식료품)	777	383	150	0	13	49
2106.10.9090	기타 단백질계물질	428	427	182	59	25	0
2106.90.1090	기타 음료베이스(알콜미함유)	155	0	0	0	32	13
2106.90.9040	자기 소화효모 및 기타 효모엑스	125	25	17	102	8	0
2106.90.9050	향미용 조제품	500	63	355	444	13	1
2106.90.9060	도토리분	1634	1470	1517	1289	1171	2414
2106.90.9091	로얄제리. 벌꿀조제품	206	299	75	109	75	52
2106.90.9099	조제식료품기타	9562	13900	5674	2847	1545	732
2202.90.9000	기타음료	3963	1936	1445	2318	104	65
2203.00.0000	맥주	952	655	647	327	82	0
2207.10.1000	조주정	19500	1625	13999	12630	0	12743
2207.10.9010	주류제조용 발효주정	995	0	2989	0	0	2593

2208.70.2000	오가피주	10	10	25	53	66	25
2208.70.9000	기타리큐르류및코디얼	560	596	902	857	1484	534
2208.90.6000	고량주	1119	1010	1001	725	272	441
2208.90.9000	기타 주정음료	530	462	322	182	39	0
2209.00.1000	양조식초	6	2	0	0	1	0
2302.10.0000	박류(옥수수외것)	41	421	49	356	480	283
2302.20.0000	박류(쌀외것)	0	1	1	25	21	0
2302.30.0000	박류(밀외것)	0	21	0	0	113	0
2302.50.0000	박류(채두류외것)	6	0	0	0	74	62
2303.10.0000	전분박과 이와유사한박류	3757	5983	5075	5369	1535	0
2303.20.0000	비트펄프.버게스 기타설탕제조시에 생기는웨이스트	16045	18671	15263	9320	17592	13948
2303.30.0000	양조 또는 증류박	1180	1088	236	390	83	2
2304.00.0000	대두유추출시 얻어지는 오일케이크및 고형의유박	24385	26651	3343	2798	581	1933
2306.10.0000	면실외것(오일케익및유박)	10290	16648	13128	12761	8196	11466
2306.30.0000	해바라기외것(오일케익및유박)	0	99	143	72	139	0
2306.50.0000	야자또는코프라외것(오일케익및유박)	461	48	388	337	82	0
2306.90.9000	기타(오일케익및유박)	108	10	118	233	19	73
2309.10.0000	개또는고양이용사료	3856	1004	267	45	50	0
2309.90.1030	배합사료(어류용외것)	194	10	109	42	48	0
2309.90.1040	배합사료(축우용외것)	817	8	0	58	6	0
2309.90.1099	배합사료기타	23	2	0	0	1	0
2309.90.2099	보조사료(기타)	299	360	76	110	125	0
2309.90.3010	사료첨가제(항생물질을 주로한것)	3951	4726	4598	2252	2261	1515
2309.90.3020	사료첨가제(비타민을주로한것)	595	877	578	438	382	7425
2309.90.3030	사료첨가제(미량광물질을주로한것)	4	0	10	10	9	0
2309.90.3090	사료첨가제(기타)	311	333	417	418	301	222
2309.90.9000	사료용조제품(기타)	836	836	389	622	165	23
2402.90.0000	시가, 권련기타	413	743	52	34	95	23
2905.43.0000	만니톨	228	212	256	181	117	95
3301.25.0000	기타정유(민트류외것)	25	57	51	25	28	49
3301.29.9000	기타(정유.감귤류외외것)	55	34	12	3	17	3
3301.90.4800	추출올레오레진(기타)	185	102	132	83	49	45
3501.10.0000	카세인	333	369	439	273	148	53

3503.00.1010	젤라틴	261	208	131	129	217	4
3503.00.3000	동물성글루기타	792	708	576	267	454	395
3504.00.2030	유리단백질	1283	1252	758	615	355	126
3504.00.2090	기타단백질물질계	22	8	169	1232	1718	1925
3505.10.1000	텍스트린	174	126	90	44	30	0
3809.10.0000	염료조제품(전분질을기제로한것)	100	35	66	64	12	0
5001.00.0000	누에고치(생사를뽑는데 적합한것)	0	82	140	286	667	1561
5002.00.1010	생사(20데시텍스이하)	2	0	0	91	270	219
5002.00.1020	생사(20데시텍스초과 25.56데시텍스이하)	18373	22391	24914	31438	34769	27304
5002.00.1030	생사(25.56데시텍스초과 28.89데시텍스이하)	587	863	722	1621	895	1380
5002.00.1040	생사(28.89데시텍스초과 36.67데시텍스이하)	461	1090	1076	1461	1105	709
5002.00.1050	생사(36.67데시텍스초과)	2270	2301	2678	2695	2149	1267
5002.00.2000	옥사	1840	2051	2476	1902	1432	606
5002.00.9000	생사(기타)	90	148	371	185	86	116
5003.10.1000	누에고치 웨이스트	13	329	76	29	48	46
5003.10.4000	생피저	9	6	7	20	11	0
5003.10.9000	견웨이스트(기 타)	134	112	56	257	14	0
5003.90.1000	페니	25	82	69	87	148	0
5003.90.2000	견노일(부렐)	12	58	15	0	40	216
5003.90.9000	견웨이스트(기 타)	91	1658	109	195	263	161
5101.30.0000	양모(탄화처리한 것)	4525	4567	6774	954	557	1014
5102.20.0000	조수모	40	356	87	148	19	0
5103.1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의 노일	282	428	239	38	134	73
5103.2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의 기타 웨이스트	19	43	31	49	117	0
5201.00.9020	기타면(섬유길이가 23.2mm이상 25.4mm미만의것)	0	81	0	283	246	0
5201.00.9030	기타면(섬유길이가 25.4mm이상 28.5mm미만의 것)	2141	25	632	9468	16198	1143
5201.00.9050	기타면(섬유길이가 28.5mm이상 34.9mm미만의 것)	28703	28564	33111	94385	74254	0
5201.00.9060	기타면(섬유길이가 34.9mm이상의것)	1063	2267	177	87	422	0
5202.99.0000	면웨이스트(기 타)	0	1	17	19	7	0
5203.00.0000	면(카드또는코옴한것)	784	515	247	279	47	18
5301.21.0000	아마(쇄경또는타마한것)	60	25	0	5	1	0
5302.90.1000	쇄경, 탐, 핵클또는기타의방법으로가공한 대마	18	6	0	31	127	0